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강정인권침해조사단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랑희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수영 경계를 넘어 활동가

자료 협조

등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 딸기 평화바람 활동가 | 백신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서선영 공익변호사그룹 희망법 |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 |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미디어 총청 | 제주의 소리 | 참세상 | 헤드라인 제주

디자인

이병구 경계를 넘어 활동가

후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실 | 김재윤 의원실 | 장하나 의원실 | 진선미 의원실

도움주신 분들

인권단체연석회의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사회적 모금 <소셜펀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 ~ 2012.6.30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I 보고서 작성 배경

II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III 사건 경과

IV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 1.1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
 - 1.2 채증, 이동제한 등 경찰의 감시와 통제의 일상화
 - 1.3 과도한 수사로 주민들을 압박
- 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 2.1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 2.2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 3 이동의 자유 제한
 - 3.1 이동의 자유 제한
 - 3.2 장시간 감금
- 4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4.1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 4.2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5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6 해군의 폭력
-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 7.1 일상적인 채증
 - 7.2 사복경찰의 채증
- 8 여성에 대한 폭력
- 9 법에 대한 권리 침해
 - 9.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 9.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의 자의적 적용
 - 10.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 10.2 공무집행방해의 자의적 적용
-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 12 언론의 자유 침해
- 13 국제 평화활동가·인권옹호자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 13.1 입국금지
 - 13.2 강제추방
- 14 건설회사와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과 채증

15 기타

- 15.1 공사 중 날아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 15.2 삼성물산 앞 퍼포먼스에 2,400 만 원 손해배상 청구
-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 15.4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 15.5 해군기지 펜스 찢어져 민간인 부상

V 결론

- 1 조사 결과
- 2 권고사항

별첨

- 1 2011년 9월 ~ 2012년 6월 강정마을 인권침해 일지
- 2 경찰청에서 공개한 연행, 기소, 구속자 현황
- 3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경찰청에 보낸 질의와 요구사항

I 보고서 작성 배경

보고서 작성 배경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한지 벌써 만 5년이 넘었다.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제주 강정마을의 삶만이 아니라 한반도, 아니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흔들 수밖에 없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심각한 평화권, 생존권 위협이다.

정부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려는 구상은 1993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국방부의 행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994년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이에 2002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대책위와 안덕면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도민의 58.2%가 반대하고 제주도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속에서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유보되었다. 그러다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이 다시 구성되어 제주해군기지 재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2005년 제주도민대책위와 안덕면 대책위도 다시 가동되었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논의중단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했다. 2005년 9월 해군기지 위미항이 검토되고 11월에는 재향군인회 등이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2006년 6월 김태환 당선자와 해군은 해군기지 TF 구성을 합의해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해 8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하였고, 이에 9월 위미 2리 해군기지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2006년 12월 제주도 해군기지 TF 영향분석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제주지역 교사 선언, 대학교수 선언, 문화예술인 선언이 잇따를 정도로 반대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2007년 1월 김태환 지사는 찬반토론 개최방안을 밝히고, 국무조정실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2월에 위미 1리 기초조사에 착수하자, 3월 위미 1리 대책위가 출범한다. 그런 중에 도지사는 당시 강정마을 이장과 어촌계장을 비밀리에 만났고, 이후 공고일 위반, 수시 방송의무 위반, 공고내용 위반하며 급작스럽게 강정마을 임시총회가 4월 26일에 열렸다. 전체주민 1,900명(유권자 1,050명) 중 주민 87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음에도 제주도지사는 5월 14일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 유치결정을 발표한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여는 것조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막았고, 겨우 2007년 8월 10일 마을 총회를 열어 윤태정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강동균 마을회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8월 20일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반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고군분투하며 6년째 싸우고 있다.

199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10년 넘게 반대하는 이유를 검토하지 않은 데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미군의 대(對)중 전략기지로써 이용될 것이라는 수많은 분석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해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평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9월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해군보고서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항공모함(CVN-65 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 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 미군의 핵잠수함이 드나드는 상황을 전제로 건설되는 기지인 것이다.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만 폄하할 수 없으며, 해군기지 건설이 가져올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위협, 이에 관한 고민을 구체화해야할 때이다.

10년 넘게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안 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온갖 편법과 비민주적 집행 속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에서 해군기지 추진이 되는 과정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은 의견 수렴의 왜곡에만 있지 않다. 상시적인 통행제한, 경찰의 폭력과 연행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외에도 생태계 파괴, 문화재 훼손, 마을 공동체 파괴, 평화적 생존권 침해 등이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의 상반된 조직에서 보여지듯,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단지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정부가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과 관련 정보를 주지 않거나 왜곡했기에 생겨난 것이다.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개입하며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은 심해지고 마을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모든 문제점과 인권침해를 전부 다루기에는 기간이나 내용, 인권침해조사단의 역량도 많이 부족하다. 이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한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2011년 9월부터 강정해안에 펜스를 치고 구럼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깡패의 폭력은 도를 지나쳤다. 강정주민들은 경찰들의 상주로 일상적인 삶조차 감시당하고 통제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공사강행 때문에 농사조차 짓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폭력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폭력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수많은 인권침해를 알리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강정에서 2011년 8월 육지 경찰 병력이 들어오고 구럼비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해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이에 공사가 진행된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강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평화권에 대한 박탈, 마을공동체의 파괴, 구럼비 밭파로 인한 환경파괴와 문화재 파괴 등도 심각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는다.

II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민군복합항으로 해군기지 설계도가 15 만 톤 크루즈가 동시 입출항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국방부도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1 년 예산도 삭감되었지만 2012 년 3 월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였다. 이를 막기 위한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평화행동에 대해 해군과 경찰은 폭력과 연행, 손해배상이라는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기록하여 국내외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에 4 월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했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은 그동안 강정에서 활동하는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기록, 법적 도움을 준 변호사들의 법정 대응 기록, 강정 카페(구럼비야 사랑해)에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강정에서 직접 평화활동을 하며 몸으로 보고 느낀 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인권 침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간은 강정에 펜스가 쳐진 2011 년 9 월부터 2012 년 6 월까지로 10 개월을 대상으로 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육지에서 대규모 경찰이 투입되었고 폭력의 수위는 높아졌다. 다만 사건경과에서 8 월은 공안관계자대책회의가 소집되면서 폭력적인 공사시공이 준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포함했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8 월의 인권침해 사건들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벌어진 인터넷 공간

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나 서울 삼성물산 앞에서 있었던 평화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엔지젤터 등 국제평화활동가에 대한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인권침해도 다루었다.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찰의 폭력과 건설사 경비용역업체의 인권침해들을 모두 다룰 수 없어 주요한 사례들만 다룬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이 쓰라린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재현되지 않기를, 당장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거나 호도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정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Ⅲ 사건 경과

사건 경과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정부의 해군기지 추진 속도와 관련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강정의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공사강행을 하면서 더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1년 9월 구럼비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8월에 육지 경찰병력이 들어오면서 인권침해는 심해진다. 8월 초 여야는 야 5당의 진상조사 활동기간 동안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 강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으나 14일 서울·경기지역 5개 중대 500~600여명과 함께 대형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가 제주에 배치되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그 후 8월 24일 갑자기 2개월 동안 멈췄던 공사가 시작되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강정마을에 들어왔다. 8월 26일 대검찰청이 경찰과 국정원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자 현장체포 △경찰을 폭행하거나 호송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공격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 전원 색출 등 원칙을 밝히고 경비, 진압 전문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팀)를 제주로 파견했다.

그 후 강정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현재형이다. 강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사실상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2011년 9월: 무작위 연행, 사찰, 폭력, 집회시위 금지통보

9월 1일 구럼비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인권침해는 광범위했다. 무작위 연행, 사찰에 가까운 미행을 통한 연행, 구럼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작위 폭력, 집회시위 금지, 이동의 자유 침해 등이다. 8월 29일 경찰이 경찰서 앞과 강정마을 일대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9월 15일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 통고서’를 보낸 것은 9월 강정 일대의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것이다. 9월 1일 새벽 4시부터 강정마을에 경찰이 투입된 가운데, 해군은 구럼비 해안으로 가는 길목 등을 차단하고 중덕 삼거리에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해군기지 건설 부지 전역을 둘러싸고 펜스가 설치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연행된 사람만 42명이며, 이들의 기소내용은 업무방해였다. 경찰병력 동원이유는 시설보호요청이었지만 시설보호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병력과 경찰장비가 사용되었다. 또한, 9월 3일로 예정된 평화비행기와 문화제를 보강한 상태에서 1,000여 명의 병력이 와서 펜스를 갑자기 치는 모순된 태도까지 보였다. 문화제를 보강한다는 통보로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안심하게 한 후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다.

■ 2011년 10월: 구럼비 출입을 막는 경찰의 위법한 연행, 해군의 폭력과 성희롱

10월은 구럼비 시험발파를 위해 구럼비 출입을 막으면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주를 이루었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은 구럼비 해안으로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출입금지가 처분 대상자를 통보했는데 너무나 광범위하였으며, 가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목적과 상관없이 구럼비 해안 등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 실제 구럼비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다.¹ 그러나 도지사는 구럼비 해안을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일이 없다. 권한도 없는 경찰이 구럼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위반², 무단출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경찰의 이런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불법 체포라는 문제 제기를 하자, 이후 경찰은 구럼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따라서 10월 경범죄로 출입자를 연행·기소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

1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지사에게 질의하여 사실이 밝혀졌다.

2 10월 연행된 사람의 기소송치 의견의 대부분은 경범죄이다. 하지만 제주시가 출입금지 요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 경범죄 처벌은 위법한 일일 뿐 아니라 경범죄는 금액이 약속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구럼비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해군은 구럼비에 들어간 대학생, 여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과 성희롱을 하였다. 또한, 경찰은 제주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시험발파를 허가했다. 특히 경찰은 강정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도 해군기지 건설 찬성 측에게만 통보하고 반대 측 주민들에게는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와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에 진입하려 하자 강제연행을 하였고, 심지어 기지사업단장 면담을 요청하는 신부마저 업무방해로 연행하였다.

■ 2011년 11월: 국제행사를 의식한 연행 자제

11월은 외교통상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제10차 제주 국제군축 비확산회의가 제주에 있었기에 대규모 연행은 없었다. 하지만 행사가 열리는 신라호텔에서 1인시위하는 사람을 연행하였다. 또한 경찰의 기자에 대한 성희롱, 그에 항의하는 활동가 연행 등을 하였다. 대규모는 아니었으나 불법연행은 이어졌다.

■ 2011년 12월~2012년 1월: 신임 서장의 강경대응과 해군의 공사강행에 의한 대규모 연행

12월은 새로 취임한 김학철 서귀포 경찰서장이 강경대응 기조를 선언함에 따라 대규모 연행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12월 26일은 이중 협약서, 설계 오류 등이 밝혀져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전면 중단의 날'을 선포하고 항의행동을 한 날이며 해군이 강정항만 입찰 공고를 낸 날이다. 12월 26일 공사장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가 되었고 평화백배와 연좌 등 종교인의 평화적 집회였음에도 27명이나 대규모 연행하였다.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여성들을 남자경찰관이 연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 중에도 조서 작성과정에서 경찰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았다. 해군의 강행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력의 과잉행사라고 할 수 있다.

신임 서장의 강경 기조 때문에 1월 10일 정문 앞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던 수녀와 신부 21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정문 앞에서의 종교행사 탄압뿐 아니라 바다에서 감시하던 활동가들을 연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카누를 뒤집거나 남자경찰이 여성활동가들의 팔다리를 끌어당기는 성추행도 있었다.

■ 2012년 2월: 해군과 대통령의 공사강행의지에 따라 구럼비 진입 불법 통제와 연행

2월은 국무총리실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 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설계풍속/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항로 범선/선박 시뮬레이션 4가지 항목에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국방부는 속도 있게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공사장 정문과 구럼비 출입통제를

심하게 하였다. 2월 18일 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때, 구럼비 해안에 미신고 현수막 3개 설치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라며 14명을 연행한 까닭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발표하고, 총리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하면서 대규모 연행이 다시 시작되었다.³ 26일 제주국제평화대회 활동가들과 항의하는 사람들 16명을 경범죄 위반으로 연행하였다. 27일 구럼비해안에 가려던 활동가들과 주민들을 막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2월 연행자에 대한 기소 송치 의견의 대부분이 경범죄위반이었다.

■ 2012년 3월~4월: 구럼비 발파 강행을 위한 평화활동가에 대한 폭력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의 공사강행 선언에 따라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서귀포 서장에게 구럼비 발파 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방부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민군복합항의 공정한 검증과 이를 위한 즉각적인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을 거부한 채 구럼비 폭파 도상 훈련에 돌입하였다. 이에 평화활동가들이 구럼비 폭파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하였다. 특히 PVC 파이프를 팔에 낀 활동가들을 망치로 내리치거나 에어 톱으로 절단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함께 활동한 국제평화활동가들을 강제추방하였다.

이러한 강경대응은 컨테이너 기도소 설치마저 막고, 제주도청 앞 철야농성도 경찰 수백명이 투입돼 강제 철거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국제평화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강제송환했다.

특히 4월 1일 송강호 박사에 대한 폭력은 도가 지나쳐 이가 부서지고 턱이 찢어졌다. 그럼에도 응급조치만 한 후 다시 수사를 진행해 치료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강정포구 진입에 대한 경찰력의 과잉대처로 문정현 신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기소송치의견에도 업무방해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럼비 발파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사 측의 편에서 경찰이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 2012년 5월~6월: 부실 제작된 케이스와 기준치 미달한 오락방지막 감시에 연행

5월은 김기용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강정인권침해에 대한 질의를 받은 직후라 5월은 대규모 연행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5월 11일 재판부가 집회시위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을 해서 사실상 5월도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6월에는 주로 건설사 측의 불법공사를 감시하고 불

³ 국무총리실은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공사강행을 발표하면서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을 경고하였다.

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업무방해로 연행하였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오락방지막이 찢어졌는데도 공사를 계속하거나 부실 제작된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는 수수방관하고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활동가들을 연행하였다.

또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실질적으로 막고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마을회에서 진행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강동군 강정마을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 2012년 6월 이후: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해군기지사업단 앞 연행과 구속

현재 가장 많은 경찰의 인권침해는 공사장 정문기지 앞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 연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종교인이나 활동가 한 명을 수명이 둘러싸는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연행, 구속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 경비용역 업체의 폭언과 폭력이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식을 모독하는 성체를 밟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경찰은 레미콘 경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풍림콘도에서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의 CCTV를 보면서 연행자를 사전에 정하는 사찰행위까지 하였다. 9월 제주 강정에서 열린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 온 국제활동가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과 환경파괴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막았는데, 특히 40M 고공 케이스에 오른 활동가들을 공사장 인부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끌어내리는 만행을 경찰은 방조하였다.

강정 해군기지 추진 일지

1993	해군본부,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제기
1994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검토
2002	해군기지 반대 제주도민대책위와 안덕면대책위 결성, 화순항 유보
2005	국방부, 위미항 재검토
2006	김태환 제주도지사, 해군과 함께 해군기지 TF 구성
2007.2	국방부, 제주도에 해군기지 동의 협조 요청
2007.4.26	김태환, 위미항 검토한다고 한 후 강정마을 주민총회 전 몰래 회동 87명만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날치기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
2007.5	제주도, 국방부에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
2007.6.8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8	강정 주민 100명 발의로 강동균 마을회장 추대,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참석하여 해군기지 찬반 비밀투표 실시, 94% 반대 결정
2008.9	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개발방안 발표
2009.4.20	강정마을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09.12	국방부,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변경계획 확정
2010.1.25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0.7.15	서울행정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2009년 1차 승인처분은 무효, 2010년 변경 승인처분은 적법"
2010.12.15	제주지법,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2011.2	해군 및 공사업체 사무소 개소,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5.4	국회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구성
2011.5.12	진상조사단 제주 방문, 우근민 도정에 6월말까지 공사 중단 요청
2011.5.18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 기각
2011.5.30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2011.6.16	서울고법,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 기각
2011.6.29	제주지법, 해군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2011.8.4	국회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재검토 요구, 국회 특위 구성 제안)
2011.9.2	항만 공사 재개를 위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구럼비 펜스 설치
2012.2.17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 발표, '설계풍속/횡풍압 (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항로 법선/선박시뮬레이션 4가지 항목에 문제점'을 인정, 선박 시뮬레이션 건의 결정.
2012.2.22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식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발표 총리실 관계기관대책회의 소집
2012.2.29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공사강행을 발표하면서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 경고
2012.3	구럼비 바위 발파 시작
2012.5	제주도, 정부에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검증 재차 요구
2012.7.5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IV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중 특히 위험한 양상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비롯하여 마을 전체를 경찰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도는 국가폭력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4·3 사건의 상처가 있다. 이러한 아픈 역사가 있는 제주도에 육지 경찰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과 국가폭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병력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병력이 강정마을에 상주하면서 마을 곳곳에 배치되어 일상적으로 채증, 이동제한 등을 하며 매우 심각하고 복합적인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통화내역조회, 후원계좌 내사 등의 과도한 수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1.1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에서부터 시작된다. 2011년 8월 14일 최초 육지부 경찰병력이 강정마을에 투입된 이후 2012년 5월까지 118 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기 등 전국 지방청 소속 9,376 명의 육지부 기동대 경찰병력이 투

입되었다.⁴ 2011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청장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사과 요구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발언하며 경찰병력 투입과 과도한 연행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했다. 9월 28일에 경찰청은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 등 T/F 팀 5명을 파견하였고, 이틀 뒤 9월 30일에는 서울청 직원 기동대 4개 중대, 경기청 여경 2개 제대, 광주청 직원 기동대 3개 중대를 파견했다. 2011년 12월 2일 제주경찰청은 ‘제 6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행동’ 행사에 경기청 기동대 4개 중대 지원 등 총 11개 중대 여경 1개 제대 등 1,0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2011년 12월 22일 김학철 서귀포경찰서장은 취임식에서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한 경찰업무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해군이 구럼비 밭과 허가를 신청하자, 2012년 3월 5일 경기청 본청 소속의 4개 중대 400명의 경찰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강정마을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2011년 8월 14일 육지경찰 약 600여 명이 제주항을 통해 제주도에 도착. 서울·경기지역 경찰병력과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대형버스 16대 등을 동원

▲ 기사출처: 참세상, 2011.8.18 / 사진출처: 제주 범대위

강정마을에서 근무하는 기동대 병력은 1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근무를 서면서 무자비하고 책임 없이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 하였고, 이에 주민들

4 국회의원 강창일 보도자료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2.5.1

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2010 년 이후 제주해군기지 집회 및 시위로 연행, 체포, 구금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2010 년 86 명, 2011 년 203 명, 2012 년 5 월 기준 254 명으로 총 543 명에 달하며 무분별한 연행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례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버스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 사건개요

2012 년 1 월 8 일 오후 6 시경 강정마을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강정초등학교 방향의 좁은 길로 진입하던 경찰버스가 길옆에 세워진 마을주민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넘어진 오토바이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면서 차량 앞범퍼도 약간 파손되었다. 강정마을회는 2012 년 1 월 10 일 김학철 서귀포경찰서장에 대형버스의 출입을 통제 및 현재 마을 내 배치된 대형버스의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강정마을에서 경찰버스가 마을주민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 사진출처: 헤드라인제주, 2012.1.9 / 사진제공: 강정마을회

□ 문제점

경찰버스 사고 장소인 강정초등학교 인근 코사마트 사거리는 평소 많은 마을주민과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해군기지 공사차량도 마을주민의 요구에 따라 통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경찰 대형버스는 비좁은 초등학교 앞길을 다니고 있어 마을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인명사고의 우려도 있다. 경찰병력이 마을에 계속 투입되면서 마을주민과의 사소한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사가 있을 경우 하루에 열대가 넘는 경찰기동대 대형버스가 좁은 길목으로 다니는 등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2 채증, 이동제한 등 경찰의 감시와 통제의 일상화

경찰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일상화와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대하는 경찰의 태도때문에 주민들과 경찰의 마찰이 격화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의 행위를 제지할 때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항의를 하면 오히려 경찰이 화를 내거나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고, 법집행시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

1.2.1 채증의 일상화

강정마을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채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의 채증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채증활동규칙」 제1조 “경찰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위해 사태 발생 시에 범법 정황을 촬영하여 정확한 상황파악 및 사법 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증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88 조(채증활동)에서는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채증이 예방적 정보수집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시위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표현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경찰의 채증활동은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증거수집으로 사용된 전례는 없으며 집회참가자의 사후처벌과 공안활동의 영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의 채증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채증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경찰의 근무 중 사복 착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서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채증을 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의문이고, 소속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는지도 의문이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2012. 01. 26.)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제18조 (사복의 착용)

-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에서 일어나는 경찰의 채증활동 문제는 강정마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채증활동이 일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서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양상을 띠고 있다. 마을 곳곳에 사복 경찰들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면서 경찰과 주민과 활동가들이 작은 마찰만 생겨도 채증을 하는가 하면, 주민 및 활동가들이 경찰의 채증에 대해 항의를 하면 연행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 상황도 아니고 모여서 이야기할 때나 농노에 그냥 서 있는 시민을 채증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례 1] 서귀포서 정보과장과 마을부회장의 면담 중에도 채증

□ 사건개요

2011년 9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공사방해를 이유로 천주교 신부 3명이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산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12시 20분경 서귀포경찰서 정보과장은 “대표자에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고경철 마을회 부회장 등이 정보과장과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경찰은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대화하는 것을 채증하자, “왜 채증하냐?”고 물으니 경찰은 “채증이 아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찍어 놓는다.”는 대답을 하였다.



서귀포서 정보과장과 마을주민의 면담 중에 채증하고 있는 사복경찰의 모습

▲ 사진출처: 동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 문제점

1999년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례는 서귀포서 정보과장이 대표자와 이야기하기를 위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채증활동이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위법적이다. 이러한 경찰의 채증활동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위축효과와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1.2.2 이동제한의 일상화와 위화감 조성

강정마을 곳곳에 배치된 경찰병력들은 길 한가운데서 방패로 막고 경비를 서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1년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중턱삼거리에 펜스가 설치된 이후 강정마을에 파견된 경찰병력들은 삼거리 올레길을 차단하고 곳곳에 경찰을 배치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펜스 설치에 항의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고립시키고 구럼비 해안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쪽으로 가는 길목을

모두 차단하기도 했다. 구럼비 발파 이후에는 강정포구 입구 중간에서 경찰병력들이 방패로 막고 서있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2011년 9월 2일 삼거리 펜스가 쳐진 이후 경찰병력들이 삼거리 올레길을 막고 있는 모습

▲ 사진출처: 동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사례 1] 경찰의 길목 차단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 사건개요

2011년 9월 22일 제주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입구에서 경찰병력이 방패를 들고 길목을 막고 있었다. 마을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방패에 핸들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화가 난 마을주민이 항의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화하였고 몇몇 주민들이 왔다. 경찰이 이 현장을 채증을 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채증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한 활동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카메라를 든 활동가에게 방송국이냐며 어느 방송국이냐며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⁵

5 관련동영상: <<http://youtu.be/nTDawll-QYs>>, 영상게시일 2011.9.23



마을주민이 타고 가던 자전거행들이 경찰의 방패에 걸려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

▲ 사진출처: 강정마을회, 2011.9.23

□ 문제점

경찰이 마을 길목 중간에 방패를 들고 막고 있으면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의 통행방해 때문에 발생한 사고와 부상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오히려 자극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을 채증 하였다. 경찰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활동가에게 도리어 촬영을 제한하는 발언을 하며 갈등을 부추겼다. 경찰 병력이 일상적으로 마을에 배치되면서 마을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례 2] 공항리무진 버스를 강정마을에 경유하지 못하도록 이동제한

□ 사건개요

2012년 4월 5일 경찰이 조현오 청장의 제주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 공항리무진 버스가 강정마을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주공항 리무

진 버스가 강정마을에 정차하지 않도록 해당 버스회사에 협조를 구하였고 버스업체는 경찰의 요청대로 리무진을 강정마을에 진입하지 않게 조치하였다. 서귀포경찰서는 2012년 4월 6일 보도자료에서 “강정마을 무정차는 공사차량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해 집회시위가 예정돼 있거나 공사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강정마을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미리 교통통제 상황을 고지한다”라고 밝혔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숙소 이동을 위해 버스에 오르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4.5

□ 문제점

당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해군기지사업단 앞 도로교통은 문제가 없었으며,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되었다. 또한, 경찰은 마치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전에 통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된 사전 차단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장소인 서울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상경을 차단하는 행위, 집회장소에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장소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참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집회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나 사실상 격리차원에서 연행을 하는 행위 …… 를 비롯한 과잉된 사전차단행위를 자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1.3 과도한 수사로 주민들을 압박

경찰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과도하고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앞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사람들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힌다며 집회시위 참가자 20명에 대해 2011년 12월 21일에서 26일까지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⁶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6일간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과도한 수사방식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2년 6월 7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정마을회 자체에서 진행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강동균 마을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하였고, 6월 20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해군기지 관련 마을 공식후원계좌와 관련한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 제주지방경찰청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한 개인 후원금 모금 계좌에 대해 수사하였다. 경찰은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과도하게 수사하며 해군기지반대 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6 국회의원 강창일 보도자료,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2.5.1

2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이들과 연대하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집회와 시위 그 밖의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법과 경찰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경찰에 의한 자의적인 법 적용과 물리력으로 표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억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 두 가지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며,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의견의 교환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의사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의사표현이며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이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의사표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표현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독재국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2.1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이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중요성이 있다.⁷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기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법적 집회가 아닌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폭력집회와 불법집회를 구별하지 않고 집회가 불법적이기만 하면 모두 금지, 해산, 연행하고 있다.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것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권리는 박탈되고 있다. 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연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집회를 방해하고 위축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7 현재 2003.10.30. 2000헌바67등: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 밖에 없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가능한 한 규제 없이 향유되어야 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것도 허용된다고 추정되어야 하고 집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집회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한다. 당국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에 항상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⁸

[사례 1] 집회금지

□ 사건개요

- 2011년 8월 28일 서귀포경찰서가 강정마을회에서 집회신고를 한 2건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신청한 1건에 대해 ‘옥외집회 시위·행진 금지 통고서’를 발송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제1항⁹과 제8조 1항을 집회금지 근거로 제시했다.

- 2012년 4월 13일 강정마을회는 4월 15일 오후 5시부터 5월 12일 오후 3시까지 강정천 체육공원, 주차장,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공사현장 입구,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등 6곳과 강정천 체육공원부터 강정포구, 강정의례회관까지의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귀포경찰서는 2시간 만에 집시법 제5조 1항 2호 및 제8조 1항 제1호를 근거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통고를 마을회관에 전달했다.

□ 문제점

집시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집회·시위의 금지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찰의 금지통고의 이유는 금지통고 며칠 전 경찰과 주민들 간의 충돌, 공사장 주변에서의 연좌 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충돌상황을 일으키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대부분 평화적인 방식의 집회에서 소수의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러한 상황은 경찰의 연행으로 종료되곤 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의 행위를 이유로 집회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개별적 의사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이다. 일정한 장소

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 194쪽

9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와 시간에 대해 집회가 사전적으로 금지된다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¹⁰ 만일 집회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은 그 행위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집회가 명백하게 폭력적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으로 전면금지해서는 안 된다.

[사례 2] 집회방해

□ 사건개요

2011년 10월 29일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제5차 전국시민행동 집중의 날>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종이탈’ 5개를 꺼내는 순간 경찰이 모두 압수했다. ‘종



경찰이 탈취해간 탈

▲ 기사출처: 미디어총정, 참소리 합동취재팀, 2011.10.29 / 사진출처: 강정마을 국제팀

이탈’은 이승민 작가가 이번 행사를 위해 구속 수감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활동가 김동원 씨 등 3명의 얼굴 모습을 본떠 제작한 것과 동물 모양의 탈이다.

경찰은 ‘종이탈’이 ‘신고되지 않는 불법 시위용품’이라는 이유로 압수하고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과 작가에게 행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행사가 30여분 지연되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제주시청 곳곳에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병력 외에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병력 3개 중대와 여경 1개 제대 등 325여명을 무장 배치하여 계엄령과 같은 분위기로 긴장감을 조성했다. 평화집회에 경찰병력을 과잉 배치하여 오히려 충돌을 유발했다.

10 2000헌바67,83(병합) 결정



제주시청 일대에 배치된 경찰

▲ 기사출처: 미디어충청, 참소리 합동취재팀, 2011.10.29 / 사진출처: 강정마을 미디어팀

□ 문제점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집중의 날> 등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타 지역의 경찰경력을 대규모로 배치함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과잉 대응으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행사는 문화제와 행진, 퍼포먼스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밝힌 상황이었음에도 무장한 경력을 전면 배치했다. 게다가 전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것과 상관없는 물품을 강제로 압수하는 과잉 대응을 했다. 집시법은 주최자의 준수사항으로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¹¹ 경찰은 단지 신고서에 누락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 시위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시법 제3 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의 ①

금지하고 있다.¹²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며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사례 3] 신고된 집회에서 연행

□ 사건개요

12월 26일 오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연좌를 한 주민과 평화운동가 등에 대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총 27명을 연행했다. 피켓항의 시위를 벌인 곳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해산명령도 없이 바로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공사장 옆에서 마이크를 연설하던 김종일 씨도 업무방해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기도 하고, 여성이 여경에 의해 연행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남성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좌 시위하는 주민, 평화운동가, 천주교 신부 등

▲ 기사출처: 참세상, 2011.12.26 / 사진출처: 다음 카페 '구럼비아 사랑해'

□ 문제점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연좌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하고 있는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해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연행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

12 제22조 (벌칙)

-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것이다. 집회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는 평화적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제 2 판¹³에 의하면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annoy) 화나게 하는(give offence)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 3 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hinders, impedes or obstructs)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례 4] 미신고집회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4월 17일 오전 7시 30분경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 50여 명이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방송차량을 압수하고 마이크를 잡고 항의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김종일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 문제점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이유로 17일 집회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했다. 구체적인 위협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금지통고도 문제이지만 단지 금지통고 된 집회 또는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연행한 것은 기본권의 침해이다.

대법원은 금지통고 된 집회에 대해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⁴

¹³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ODIHR)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nd ed.(2010.6.4.), <[http://www.venice.coe.int/docs/2010/CDL-AD\(2010\)020-e.pdf](http://www.venice.coe.int/docs/2010/CDL-AD(2010)020-e.pdf)>, 이 지침은 2007년에 처음 공포되었다가, 2010년 개정되었다. 2007년 지침은 <http://www.osce.org/odihr/24523> 참조.

¹⁴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금지통고된 집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6294)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2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강정에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지향하는 사상에 따라 종교행위를 하였고,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저항을 했으며, 예술인들은 해군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민주적으로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폭력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표현행위들에 대해 각종 법을 끌어들이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연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내면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이다. 각자의 양심과 사상에 따른 평화로운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검열되거나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소통의 과정을 만들고 자유로운 표현들을 보장해야만 한다.

[사례 1] 종교의식

□ 사건개요

- 2011년 9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찰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맞은편 인도에서 미사를 드리던 문정현 신부와 이영찬 신부, 박도현 수사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영찬 신부에 대해서는 공사 차량을 막아 업무방해죄로, 문정현 신부와 박도현 수사는 공무방해죄로 체포했다. 당시 이영찬 신부, 박도현 수사는 경찰이 미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공사를 계속해 항의했다. 이영찬 신부는 서서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정도였으며 직접 공사차량을 저지하지 않았다. 미사 중에 1.5평짜리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근로자 휴게실'을 실은 차량 등이 계속 공사 현장 정문을 들락거렸고, 종교인들이 항의할 때는 이미 경찰이 기지 공사장 현장 정문을 막고 있었다.

- 송강호 박사는 2011년 10월 11일 오전 7시 1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안 구름비 해안에 진입해 아침기도를 올리던 중 현장에서 해군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송강호 박사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무단출입) 혐의로 조사받고 3시간 만에 풀려났다.

[사례 2] 촛불문화제

□ 사건개요

2011년 10월 29일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제5차 전국시민행동 집중의 날 행사로 오후 8시 강정천 올레길 입구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영상 상영이

끝난 밤 10 시 30 분경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의례회관에서 코사마트 사거리까지 촛불 행진에 나섰다.

그런데 현장에 배치돼 있던 경기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병력이 이를 저지했다. ‘초를 들고 행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촛불행진을 진행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20 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시민들이 초를 끈 채 행진을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¹⁵

[사례 3] 기자회견

□ 사건개요

2011년 9월 21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해군기지 저지 서귀포시민회의와 읍면동 대책위원회 등은 10시 30분 공사장 정문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형경찰버스와 승용차량 등으로 공사장 입구도로 한쪽 면을 바리케이드를 친 후,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소를 원천봉쇄함은 물론 주민들의 이동마저 제한시키면서 1시간여 동안 격렬한 항의가 있었다. 인도에서의 이동조차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막아내는 방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려 했던 관계자와 주민들은 경찰에 의해 3~4 군데로 분산돼 봉쇄당했다. 결국,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다.

[사례 4] 1인 시위

□ 사건개요

2011년 11월 8일 외교통상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제 10차 제주국제군축비확산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라호텔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시위를 벌이던 송강호 박사 등 평화활동가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12시경 신라호텔 측에서 송 박사 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곳은 신라호텔 측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밖으로 물러나 1인시위를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송 박사 등이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실랑이 끝에 신라호텔 측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로 송 박사 등 3명을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송강호 씨는 사지가 들러 끌려나갔다.

연행과 관련해 다음날 미국 뉴욕 UN 본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공식 질의가 나왔다. 한 외신기자가 “군축회담장에서 군축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든 사람들을 체포해 간 어처구니

15 관련동영상: <<http://youtu.be/quUhWDthJyg>>, 영상게시일: 2011.10.31

없는 사건을 알고 있느냐”고 대변인에게 질의했다. 외신기자는 “UN 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뤄낸 이러한 군축 회담의 의미를 볼 때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을 체포한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¹⁶



신라호텔에서 침묵시위 중인 평화활동가

▲ 기사출처: 미디어충청, 2011.11.8 / 사진출처: 평화활동가 윤병희

9 November 2011



Spokesperson's Noon Briefing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News and Media Division • New York

• • •

Question: Okay, I guess I'll go with the disarmament one.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n arrest of activists on Jeju Island for protesting a large naval base. But they say at least that their arrests took place during the UN-ROK [Republic of Korea] disarmament conference and they found their treatment by authorities particularly egregious in light of sort of a UN involvement in this conference there. So given, without trying to pigeonhole the Secretary-General, but given the UN involvement at this conference, is he aware of these arrests? What does he think of them and what does he think of the ironic, you know,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where these disarmament conferences take place?

Spokesperson: Let me check, I don't have anything on that. I am happy to come back. Let me check, let me check.

• • •

11월 9일 UN 공식 브리핑 캡처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11.13

16 제주의 소리, “군축회의서 활동가 체포 국제문제되나...UN ‘사실 확인’”, 2011.11.13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775>)

44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사례 5] 불법에 대한 항의행위

□ 사건개요

2011년 2월 18일 구림비 해안에 설치된 건설회사 인부들이 기도장을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림비 해안으로 들어가 항의를 한 문규현 신부와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인 고권일 씨 등 14명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을 적용해 연행했다. 경찰은 상황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 이들의 행동을 이날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염원하며 열리고 있던 '제 7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보고 구림비 해안이 집회신고 된 지역이 아니므로 현수막 게시는 위법이라면서 현행법 체포했다. 이는 '제 7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보지 않고 통제해야 할 불온한 행위로 보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다.

당시 사람들이 집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경찰은 현수막을 근거로 '불법집회'로 규정 4차 해산명령 후 사람들 연행했고 이미 해산한 사람들까지 추적하여 연행했다. 그 와중에 건설업체 직원들 계고장도 없이 무대 절거했다. 설사 그 행위가 집회라 하더라도 미신고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강제로 해산할 수 없으며 연행은 더욱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함으로써 대립건설에 의한 불법철거를 동조한 것이 되었다.

경찰은 연행된 14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18일 밤늦게 이들을 석방했다.

[사례 6] 예술품 설치

□ 사건개요

강정마을에서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이 00 씨와 최 00 씨는 2011년 9월 25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인근 추모비 터¹⁷ 앞에 표지판을 차용한 예술품을 설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예술품 설치가 '불법'이라며 가로막았다. 경찰에 의해서 호출된 대천동사무소 공무원은 '옥외광고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설치품 철거를 요구했다. 경찰과 공무원 측이 제시한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률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8 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4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품이 아닌 정치적인 옥외광고물이라고 간주해도 철거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동사무소 측은 예술품에 '파괴'라는 단어가 해군기지 반대를 나

17 해당 부지는 12가구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상에 대해 추모비를 설치한 곳으로 소유주는 마을사람들이다.

타내고, 예술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내용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군 측은 다음날인 9월 26일 이곳을 방문해 ‘이곳은 해군의 땅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며 채증하기도 했다.



철거를 요구한 예술품

▲ 사진출처: 참세상, 2011.9.26

□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점

국제인권규범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 조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과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일반논평 34 호¹⁸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규약에서 어떠한 예외나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 권리이다. 의견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언제나, 어

¹⁸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CCPR/C/GC/34, 2011.7.21,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떠한 이유에서든,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규약 하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거나 인지되거나 추정된 의견을 이유로 권리가 손상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의견이 보호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과학적, 역사적, 도덕적, 종교적 성격을 가진 의견이 포함된다. 의견을 가졌다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이 가지는 의견을 이유로 체포, 구금, 재판, 수감하는 등, 개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낙인화하는 것은 제1조 제1항에 위배된다(9문단)."

"어떤 의견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금지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10문단)."

"제2항에서는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권리에는, 제19조 제3항과 제20조 규정의 제한 내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상과 의견에 대해 표현하고 전달받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정치적 담론, 자신의 개인적인 사안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논평, 선거운동, 인권에 대한 토론, 저널리즘, 문화적 및 예술적 표현, 강의, 종교적 담론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 상업적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 몹시 모욕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은 제19조 제3항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범위는 그러한 표현까지 아우른다(12문단)."

"자유로우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 및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기타 규약 상의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규약에서는, 매체가 기능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리를 아우른다. 공공의 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정보와 사상을 시민, 후보자, 선출된 대표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언론 및 기타 매체가 공공의 쟁점에 대해 검열이나 제지없이 논평하고 여론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여 대중은 매체 생산물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3문단)."

"당사국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격들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항이 다당제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적 원칙, 인권에 대한 옹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정당화로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더구나,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 고문, 생명에의 위협과 살해와 같은 형태 등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19조와 부합하지 않는다(23문단)."

"제3항에서 의미하는 "법"이라고 특징지어지는 규범은, 충분히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개인이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또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법이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종류의 표현은 적절히 제한되고 어떤 종류는 제한될 수 없는지,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충분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25문단)."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위협의 정확한 성질과 특정하게 취하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며, 특히 그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제시해야 한다(35문단)."

위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생각, 의견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포함한다. 직접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여 현재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보완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사회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대의견을 폭력적으로 억압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 등의 창작적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를 특히 창작의 자유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 정치에 있어서 정치활동은 사상,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시행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려운 것¹⁹”,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²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여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²¹”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에도 현재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각종 법을 끌어다 표현자들을 범죄시키고 있다.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행과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축효과란 합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통제에 순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광범위할수록,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제가 횡행할수록 위축효과는 더욱 커진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위축효과가 문제 되는 것은 위축효과가 시민들의 자기검열을 일상화하는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위축효과는 곧 표현의 내용에 대해 권력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성을 편 가르기 하는 권력작용이며, 결국에는 편협한 시민성이 의사소통 공간을 점령하게 만드는 교육적 이데올로기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²²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있어 위축효과를 금지하고 있다.

19 헌재 1992.11.12 89헌마88.

20 헌재 1998.4.30 95헌가16.

21 헌재 1991.9.16 89헌마63.

2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9~30쪽, 2012

3 이동의 자유 제한

3.1 이동의 자유 제한

2009년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체결했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 (물론 이 역시 이중협약서 체결로 불법임이 드러났지만) 제 8 조 ‘권리행사의 제한 배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을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경찰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수시로 제한하고 있다.

[사례 1] 펜스 설치 이후 광범위한 출입 통제

□ 사건개요

2011년 9월 2일,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 약 6백여 명과 제주 경찰 등 경찰병력 천여 명이 일출 전인 새벽 4시부터 기습적으로 강정마을에 투입된 가운데, 해군은 구럼비 해안으로 가는 길목 등을 차단하고 중덕 삼거리에 펜스를 설치했다. 이날, 법원의 공사방해금

지 가처분 결정²³을 근거로 해군기지 건설 부지 전역을 둘러싼 펜스가 설치되어 구럼비 해안으로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 문제점

펜스 설치의 근거가 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자체로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 등 특정 ‘단체’를 가처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과도한 법 적용이다. 게다가 해군은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가처분 대상자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을 목적과 상관없이 구럼비 해안 등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군이 점유한 구럼비 해안은 해군기지 건설 부지이기 이전에 오랫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었다. 그러한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이다.

[사례 2] 도로 통제

□ 사건개요

2011년 9월 2일 구럼비 해안으로 가는 길목에 펜스가 쳐지던 날, 경찰은 마치 계엄령을 선포한 듯 외부와 강정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강정마을을 원천 봉쇄했다. 강정마을로 향하는 월평동과 대천동사무소 앞 도로에 교통경찰을 투입하고 표지판을 세워 “해군기지 공사 관련, 강정마을에서 집회 등이 있기에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할 수 없으니 우회하라”고 지시했다. 풍림콘도 인근에는 도로 차단막을 설치해 이동을 완전히 막았으며,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차벽이 설치되었다. 경찰의 차량 통제로 공항 리무진버스도 강정마을을 통과하지 못한 채 노선을 변경해 운행되었다.

□ 문제점

당시 펜스설치 작업은 강정마을을 원천 봉쇄한 채 군사작전처럼 진행되었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중덕 삼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간까지, 외부에서 강정마을로 들어오는

23 해군은 제주지방법원에 강동군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 37명과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총 5개 단체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8월 2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보조참가인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공유수면에 가처분 대상자들이 침입하거나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각 200만원씩을 신청인인 해군 측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8월 31일 중덕삼거리 등 4곳과 화순항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표지판이 세워졌다.



교통 통제 표지판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9.2



차벽에 가로막혀 연좌하고 있는 신부님들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9.2

모든 도로를 통제한 것이다. 당시 경찰의 주장대로 강정마을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집회시위를 근거로 이렇듯 광범위하게 도로를 통제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이다. 2009년,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서울광장을 봉쇄했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경찰이 강정마을에서 행한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도로 통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 헌마 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2009.6.30)

피청구인이 2009. 6. 3.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3) 그러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로써는 공익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집회의 금지와 해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판례집 15-2하, 41, 5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통행저지행위는 개별적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에서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이어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저지행위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3] 근거 없는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

□ 사건개요

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둘러싼 펜스가 설치되고 난 후, 경찰은 펜스를 넘어 또는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²⁴ 무단출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의 이런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불법 체포라는 문제 제기가 있자, 2011년 2월부터는 구럼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2만 원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 문제점

경찰이 구럼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려면, 권한이 있는 자가 법률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구럼비를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강정마을회의 질의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²⁵ 따라서 구럼비에 출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즉, 경찰의 구럼비 해안 출입자 연행과 기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설사 구럼비 해안이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무단출입죄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송강호 박사와 같이 구럼비 출입으로 체포된 이들은 당시 전혀 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은 경미한 사건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동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례 4] 해상이동 제한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

□ 사건개요

- 경찰은 2012년 2월 27일부터 강정 앞바다의 모든 해상활동을 물리력으로 봉쇄했다. 그동안 주민과 활동가들은 카약을 이용하여 구럼비로 들어가거나, 해상에서 불법 공사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왔다. 그러자 경찰이 아예 카약을 물에 띄우지 못하도록 강정포구에서 막은 것이다. 백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카약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앞을 봉쇄

24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25 2012.02.20 서귀포시청의 답변 “귀 마을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한 구럼비바위 출입금지 결정 여부 답변 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우리 시가 출입금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12-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금지구역



- ①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 (33-13-37N 126-28-40E)
- ② 33-13-20N 126-28-45E ③ 33-13-14N 126-28-57E
- ④ 33-13-10N 126-29-05E ⑤ 33-13-12N 126-29-14E
- ⑥ 33-13-12N 126-29-31E ⑦ 33-13-15N 126-29-45E
- ⑧ 33-13-24N 126-29-47E ⑨ 33-13-36N 126-29-37E
- ⑩ 도순천(강정천) 끝단 (33-13-54N 126-29-28E)를
연결한 내측해역

2. 기 간 : 2012. 04. 13 - 2015. 12. 31

3. 대 상 : 모터보트, 요트, 카약 등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2. 4. 12.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 사진출처: 헤드라인 제주, 2012.04.13.

3월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은 “사유재산인 카약을 뺏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²⁶

-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해군의 요청에 따라 2012년 3월 23일 강정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제 25 조²⁷에 의해 강정포구 동방파제부터 강정천 끝단까지 사실상 강정 앞바다 전체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모터보트

하여, 사람들이 카약을 운반해
해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섰
고 이에 카약을 이동하려는 사
람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 발
생했다. 또한, 카약이 해상에
뜨게 되면 해경이 보트를 타고
쫓아와 일일이 붙잡거나 직접
물에 뛰어들어 카약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상
활동을 방해하고 물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해상에서 한 시간
이상 카약을 잡고 놓아주지 않
는가 하면, 수영으로 구럼비에
접근하는 활동가들에게 해경이
물속에서 일일이 달려들어 붙
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상으로의 이동
을 금하는 어떠한 근거도 대지
못했으며 단지 범죄예방의 차
원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사람
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찰
의 이런 행위에 대해 2012년

26 제주의 소리, 2012.03.1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65>>

27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동력기구뿐만 아니라 카약 등의 무동력 기구도 일체 사용을 금지했으며, 만약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해경은 금지구역 공고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현재 만·군복합항 공사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수중 평탄화 작업, 부지정비작업 등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공사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⁸ 한편 3월 8일 해경은 금지구역 지정 이전에 강정마을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지정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단 하루만인 3월 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는 그저 형식적인 의견 수렴절차였고, 강정마을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묵살되었다.

□ 문제점

육상은 경찰력으로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구럼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해상이었다. 그러나 해경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구럼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막히게 되었다. 해경은 금지구역을 설정한 이유로 ‘안전’의 문제를 내세웠지만, 그보다는 구럼비로 들어가는 모든 방법을 차단하여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해경이 해상에서 수영이나 카약 등의 방법으로 이동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제지해왔던 건,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감시하고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경찰은 일방적으로 이를 제지해왔다. 실제로 준설작업 등 해군기지 공사가 오락방지막이 훼손된 채로 진행되는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팀은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금지 구역과 기간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실상 포괄적인 전면 금지령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권리침해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다. 또한, 해경은 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한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강정마을회가 이를 반대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이 금지구역을 지정을 강행했다. 즉, 의견수렴은 하나 마나 한 절차였던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 등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으며, 주민과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저항할 여지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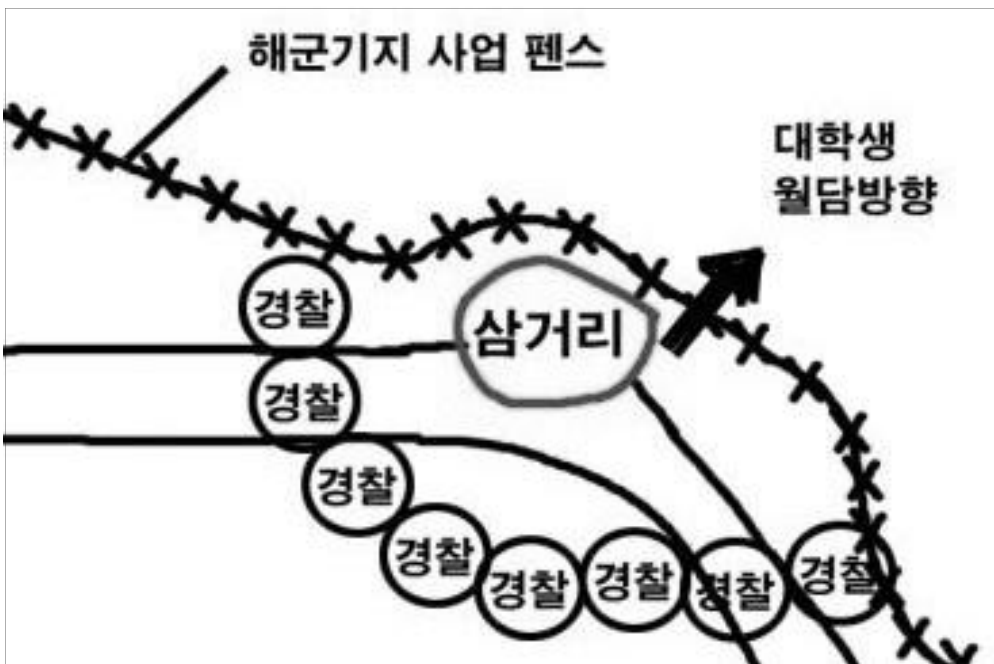
²⁸ 헤드라인 제주, 2012.04.13,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64>>

3.2 장시간 감금

[사례 1]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장시간 감금

□ 사건개요

2011년 10월 2일 오후 7시경 중덕 삼거리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구럼비 바위를 보기 위해 해군기지 펜스를 넘어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해군과 SSU 대원들이 다가와 한 학생을 덮어치기하고, 넘어오는 학생들을 날카로운 철조망 쪽으로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중덕 삼거리 펜스 밖에 있던 사람들은 펜스를 두드리고 항의하며 폭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2시간 30분 가량 이들을 중덕 삼거리에 감금시키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유는 펜스를 넘어간 이들과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귀포경찰서 김학근 경감은 “이곳에 있는 이들은 서로 공모했을 우려가 있기에 경찰들이 나갈 수 없게 막고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군의 민간인 폭행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던 중이었다. 중덕 삼거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밥을 먹는 식당이 있는 곳으로 감금당한 이들 중에는 당시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뚫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경찰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중덕 삼거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중덕 삼거리 감금 당시의 상황

▲ 그림출처: 동글이 (강정마을 지키미)

[사례 2] 감금 후 화장실 이동 제한

□ 사건개요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던 날, 사람들은 화약 이동을 막기 위해 기지사업단 정문 앞에 모여 있었다. 오전 8시경 강정교 가운데 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경찰병력이 앞뒤로 둘러싸서 1시간 넘게 감금시켰다. 한 여성 주민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계속 요구했으나 경찰은 사람들을 전혀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1명씩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했으나 감금은 계속되었고, 이 때문에 몇몇 주민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봐야 하느냐’며 절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시 화약 차량이 기지사업단 정문 쪽으로 들어오지 않아 소강상태였고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다리 한가운데 평화롭게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육지에서 파견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1400 부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들을 감금했다.

□ 문제점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장시간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시킨 경찰의 행위는 사실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특히 전쟁 중의 포로에게도 화장실에 갈 권리는 보장되는데, 이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4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의견을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해군기지 건설현장인 강정에서는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경찰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활동가나 주민 몇 명만 모여도 경찰이 동원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표현행위가 중단된 강정마을에서는 집회가 아닌 장소에서도 경찰의 진압과 폭력, 연행이 일어난다. 집회일 경우에는 집회 해산을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하면서 폭력이 일어나며, 집회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한다.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찰 폭력의 증가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8월 30일 서울청 기동대 7개 중대 700명을 파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서울청 4개 중대, 경기청 여경 2개 중대, 광주청 3개 중대를 파견하였고, 심지어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TF 팀 5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2011년 여름에 정부는 공안대책회의에서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면서 강경한 진압이 이루어졌다.

4.1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경찰은 특별히 대규모 집회가 아닌 경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백배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미사를 드려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에 들어가거나 앞에서 모였다는 것만으로 무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압은 사실상 해산을 목적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저항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사적 처벌이자 표현행위의 위축효과를 노린 것으로 기본권 침해이다.

[사례 1] 중덕 삼거리에 펜스를 치기 위해 무차별 폭력 행사

□ 사건개요

2011년 9월 1일 해군의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은 9월 2일 오전 5시 경찰기동대와 여경 부대 등 6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강정마을로 들어가는 차량을 통제했다. 오전 6시 중덕 삼거리에 있던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철제 펜스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니 나와달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바로 진압복을 입은 경찰력을 현장으로 투입했다.

컨테이너 위쪽과 농성 현장 앞뒤 등을 에워싼 채, 공사 관계자 등을 제외한 사람들의 가지 부지 안 출입을 막았다. 해군은 경찰이 보호막을 친 가운데 굴착기 2대를 공사장으로



9월 1일 중덕 삼거리에 펜스 설치를 강행하려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9.2

들여보내 오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중덕 삼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다.

주민들 100여 명은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바닥에 드러눕거나 굴착기 앞에 앉았고, 전주교 전주교구 손영홍 신부는 굴착기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끌려 내려왔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중덕 삼거리에 있는 망루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35명을 무더기 연행했고, 마을회관에서는 고유기 제주 범대위 집행위원장과 주민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 문제점

시기상 9월 3일 예정된 문화제를 허용한 상태에서 갑자기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이미 중덕 삼거리에 모여



펜스 설치에 항의하며 가건물에 오른 활동가들을 끌어내려는 모습

▲ 사진출처: 헤드라인 제주, 2011.9.2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펜스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부상자가 속출했다. 따라서 시설보호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찰의 수동적인 개입이 아니라 사실상 공사 강행을 위해 경찰 물리력을 과잉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폭력과 연행이 있었다.



끌어낸 여성활동가를 남성경찰들이 사지를 잡고 연행하는 모습

▲ 사진출처: 헤드라인 제주, 2011.9.2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일부발췌

- 모든 경찰관은 "상부 명령에 대한 복종"이 불법적 살해나 고문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 고문이나 여타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는 절대적으로 금지돼있다.
- 현직 연수 또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갈등해결 기술을 공부하라.
- 비폭력적 수단이 우선적으로 시도돼야 한다.
- 폭력은 오직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
- 폭력은 적법한 법 집행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불법적인 폭력 사용에는 어떠한 예외나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 폭력의 사용은 언제나 적법한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 폭력 사용에는 억제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 손상과 상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차별화된 폭력 사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이용을 훈련 받아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비폭력적 수단의 이용을 훈련 받아야 한다.
- 폭력 또는 무기를 사용한 모든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어야 하고 조사되어야 한다.
- 상급자가 폭력 남용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음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게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
- 이러한 규범을 침해한 경찰관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생명권(기타 나열된 권리 생략)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 자유로운 표현,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필요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의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다치고 충격을 입은 모든 사람은 즉각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상황이 불필요하게 격화되지 않게끔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집회들을 관용하라.
- 군중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명확한 탈출통로를 남겨둬라.
- 군중을 한마음의 대중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다뤄라.
-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전술을 피하라.
-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대한 존중에 분명히 입각한 명령을 내려라.
- 보증되지 않은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라.

[사례 2] 위법한 채증과 경찰의 이단 옆차기 폭력

□ 사건개요

2012년 3월 9일 오후 5시경 기지 사업단 앞에서 경찰과 평화활동가 간 충돌이 벌어졌다. 현장을 채증하던 여성 경찰관이 넘어지며 캠코더를 떨어뜨렸고 현장에서 이를 주운 이 00 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하였으나 곧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단옆차기로 폭행을 가했다. 오후 7시 40분쯤, 인권위의 중재로 이 00 씨와 김 00 경감 2명이 서귀포경찰서로 임의동행에 응하기로 하면서 대치상황은 마무리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이 00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 00 씨를 폭행했다고 지목받은 김 00 경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00 씨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김 00 경감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라며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 문제점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로서 법에 따라야 함에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채증을 하던 여경은 올레콘 복장으로 채증을 하고 있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경찰 여부, 공무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행사를 근거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김 00 경감이 '이단 옆차기'라는, 경찰력 발동의 근거 없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에 있던 평화활동가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었다.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이후에도 경찰들이 위법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00 씨의 체포사유가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이었다가 이후 폭행 부분만 체포사유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연행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랑크 라 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법 집행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이나 식별번호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프랑크 라 튀) 한국보고서의 권고>

63. 특별보고관은 진압 경찰의 폭력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을 알고 있으나,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보고관은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모든 혐의를 독립적 기구가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사례 3] 적법 절차 없이 부당하게 행진 차단 후 최루액 발사

□ 사건개요

2012년 4월 1일 민주노총 주최로 오전에 강정마을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공공기관 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한미 FTA 폐기! 제주 4.3 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강정포구로 행진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행진로(나들가게 사거리)를 차단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최루액(캡사이신 성분)을 쏘며 연행하였다. 항의 후 경찰은 행진로를 풀어줬으나, 강정포구 안쪽으로 행진하려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불법적으로 봉쇄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연행자 6명 중 2명은 현장에서 풀어주었다.

□ 문제점

평화적으로 행진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나 해산명령 등의 적법 절차 없이 통행을 차단하였으며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얼굴에 발사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건강권마저 위협하였다.



가로막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얼굴에 발사하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시행일 99·11·25]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5·24]

<법 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²⁹⁾>

일반규정

- 제 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 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 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 집행관은
 -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대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 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8)>

경찰청장에게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수 있으므로 최고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 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4.2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법 집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과 인권을 지키면서 공권력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하지만 경찰과 해군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폭행하고 연행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에서 벌어지는 경찰 폭력은 집회나 종교행사 등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는 일상적인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경찰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위압적이고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 많은 경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당하고 연행된다. 강정은 무법지대이다. 불법 탈법 위법을 저지르는 경찰과 해군, 건설사에 대해 항의하는 것조차 처벌받고 있다.

[사례 1] 밭을 훼손해서 항의하자 밭주인을 채증하고 폭행

□ 사건개요

2012년 3월 25일 경찰이 강정포구 봉쇄작전 중에 주민들의 마늘밭을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경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자 오히려 항

29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9.7. 제8차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의 채택)

의하는 발주인을 경찰이 채증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했던 경찰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시민의 팔과 다리를 꺾고 진압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 문제점

경찰이 주민의 일터인 밭을 밟아 재산상의 손해를 비롯한 불편을 끼쳤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행위는 모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며 채증을 하는 것은 법에 의거한 활동을 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으며 경찰의 권한 남용이다.

[사례 2] 군홧발 폭행

□ 사건개요

2012년 2월 27일 강정포구에서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막았다.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한 활동가가 쓰러졌다. 활동가가 쓰러져 있는데 경찰들이 계속 진입해 오면서 쓰러진 활동가를 계속 밟게 되었다. 이를 본 k 씨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위로 엎드렸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k 씨의 몸이 굴러 그 활동가 옆에서 하늘을 보고 눕는 자세가 됐다. 그때 어떤 경찰 한 명이 위에서 k 씨를 노려보며 군홧발로 k 씨의 목과 얼굴을 세게 밟아 5~6 초간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경찰이 밟을 땀 후 k 씨는 경찰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누운 채로 자신을 밟은 경찰의 밟을 두 팔로 안고 있다가, 끈을 풀고 신발을 벗겼다. 갑자기 경찰들이 뒤로 물러나고, 잠시 탈진해 누워있던 k 씨는 일어나 신발 한 짝이 없는 경찰을 찾아 그 경찰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그 경찰은 사과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들이 그 경찰을 에워싸고 보호하자, 자신을 밟은 경찰의 뺨을 때렸다. 이 장면을 다른 사복경찰 하나가 채증하고 있었다. 화가 나서 채증하는 사복경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 후 또 다른 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에 얼굴과 가슴을 세게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얼굴과 목을 밟히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방패에 부딪쳐 뒤로 넘어지게 되자 k 씨는 분노와 좌절감에 포구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그 아래에 경찰들이 서 있다가 경찰관 한 명이 떨어지는 k 씨와 부딪쳐 목과 어깨를 다쳤다. 경찰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고 포구에서 떨어지면서 경찰이 다친 일로 인해 k 씨는 경찰에 소환되었고, 현재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k 씨는 당시 군화로 얼굴과 목을 밟혔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문제점

k 씨는 경찰의 부당한 폭력에 항의해도 오히려 채증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빌미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닐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수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상 위축효과를 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 부당한 공권력행사 항의하자 협박하며 폭행

□ 사건개요

2011년 10월 1일 구림비에 들어갔던 대학생들을 연행할 때, 경찰은 중덕 삼거리에 진을 치고 봉쇄하였다. 통행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에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공동공모 정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당시 집회나 어떤 행사도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 통행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와 설명이 없는 것에 항의한 것을 공동공모 정범으로 몰아붙였다. 협박에 항의한 한진중공업노동자 1명을 경찰이 방패로 가격했으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4명의 노동자를 연행하였다.

□ 문제점

경찰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하면서도 항의하면 해당하지 않는 각종 법 조항을 들며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했다. 잦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잦은 연행은 경찰이 강정에서 치외법권인양 법집행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심리적 외상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에서 연행은 무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체포가 대부분이며,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다. 비참여자들도 연행하고 경미한 범죄인 경우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연행일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여성들을 남성경찰관이 연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0년 이후 2012년 4월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집회 시위 관련 연행, 체포, 구금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만 543명에 달한다.³⁰ 해군기지 반대 싸움과 관련되어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이 300명에 달하고 경찰 측이 단순 집회 참가자나 1인 시위자나 종교행사 참여자까지 모조리 연행하면서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특히 발파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2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강정마을에서 연행된 평화활동가와 주민들의 수가 55명이나 된다.

경찰들이 시민들을 연행해갈 때는 연행의 사유와 기타 권리를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여성참가자 연행을 남성 경찰이 하면서 여성들의 옷이 벗겨지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경찰이 아닌 해군이나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행, 연행도 있어서 문제이다.

30 경찰청 제출 자료 기소송치의견 제출자 512명

그리고 집회현장도 구럼비 공사현장 근처가 아님에도 집회나 평화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행한 후에 연행하기도 했다. 당시 출석요구서 발부 때문이라고 했지만, 출석을 약속한 사람마저도 연행하였고 미행 후 연행했다. 이는 경찰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심각하다.

4.3.1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연행

강정에서 연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연행된 사람의 수와 기소자 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연행이 무차별적임을 보여준다. 참가자가 아니어도, 사진을 찍거나 면담을 요청해도 연행된다. 또한, 자의적 체포를 보여주는 것은 연행이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집회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9월 2일 펜스를 설치한 날에는 연행자가 35명인데, 기소자는 18명에 불과하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지만, 금액이 50만 원 미만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제한된다(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 214조). 또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강정에서 체포 사유는 집시법상의 해산명령 불응죄,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이다. 대부분 강정에 사는 사람들로 주거가 분명한데도 연행하였다.

해산명령 불응죄의 경우, 설령 자진해산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연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가 아닌 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연행자 다수는 미란다원칙조차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개별적 진술이나 변명의 기회 없이 곧장 연행되었다. 경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해산명령불응이라며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강제연행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얼마 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도로교통법 제 157조제 5호)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도로교통법 제 157조제 5호, 제 68조 3항)하고 있어 연행하기에는 경미한 범죄이다.

그 외에도 기소의견으로 업무방해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따로 다루기로 한다. 경찰 폭행에 항의했다고 체포해가고 업체용역들의 불법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경범죄 스티커를 끊으면서까지 체포해가는 명백한 불법체포 사례들이 즐비하다.

체포 이후 기소의견 송치 건수

○ 2010 년

일 시	체포인원	내용	의견송치
'10.01.18	52명	업무방해	기소 12
'10.12.27	34명	업무방해	기소 20

○ 2011 년

일 시	체포인원	내용	의견송치
'11.04.06	2명	업무방해	기소 2
'11.05.09	1명	업무방해	기소 1
'11.05.19	9명	업무방해	기소 9
'11.07.08	29명	업무방해	기소 29
'11.07.15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08.09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08.24	5명	업무방해	기소 5
'11.08.25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09.01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09.02	35명	업무방해	기소 18
'11.09.03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9.30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10.2	15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5
'11.10.04	10명	경범죄, 집시법위반	기소 10
'11.10.06	4명	경범죄	기소 4
'11.10.09	1명	경범죄	기소 1
'11.10.11	1명	경범죄	기소 1
'11.10.12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10.22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11.04	1명	폭력행위등	기소 1
'11.11.08	4명	경범죄, 퇴거불응	기소 4
'11.12.23	1명	업무방해	기소 1
'11.12.26	27명	업무방해	기소 27

○ 2012 년

일 시	인 원	내용	의견송치
'12.01.10	29명	업무방해	기소 1
'12.01.16	2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2
'12.01.17	1명	업무방해	기소 1
'12.01.27	2명	업무방해	기소 2
'12.01.30	3명	업무방해	기소 3
'12.02.03	8명	업무방해	기소 8

'12.02.05	10명	경범죄	기소 10
'12.02.09	5명	업무방해	기소 5
'12.02.18	14명	집시법	기소 14
'12.02.21	4명	경범죄	기소 4
'12.02.26	16명	경범죄	기소 10
'12.02.27	5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5
'12.02.28	3명	경범죄	기소 3
'12.03.06	4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4
'12.03.07	19명	일반교통방해	기소 8
'12.03.08	2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2
'12.03.09	30명	경범죄, 공무집행방해	기소 23
'12.03.10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3.12	16명	경범죄, 폭력행위등	기소 9
'12.03.19	10명	업무방해	기소 10
'12.03.21	4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기소 3
'12.03.23	2명	도로법위반, 업무방해	기소 2
'12.03.29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4.01	9명	일반교통방해	기소 9
'12.04.03	5명	업무방해	기소 5
'12.04.06	2명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4.09	2명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기소 2
'12.04.12	8명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기소 8
'12.04.14	12명	재물손괴, 집시법위반	기소 11
'12.04.15	1명	경범죄,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4.16	14명	업무방해	기소 13
'12.04.17	3명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기소 1
'12.04.24	1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5.31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6.04	1명	업무방해	기소 1
'12.06.07	2명	업무방해	기소 2
'12.06.08	8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4
'12.06.14	2명	업무방해	기소 2
'12.06.24	3명	업무방해	기소 3

자료출처: 경찰청(장하나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

체포 이후 기소된 총 기소자 수(총 372 명)

연도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7월 현재
인원(기소의견)	32	144	196

자료출처: 경찰청(장하나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

[사례 1]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항의해도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10월 2일 구럼비에 들어갔던 대학생들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중덕 삼거리에 진출을 치고 봉쇄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공동공모 정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범죄자로 규정하자, 이에 항의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1명을 경찰이 방패로 가격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4명의 노동자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촉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사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문제점

공무수행이 위법했을 때 공무로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행위를 해도 연행했다.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경찰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 15136 호])”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경찰공무원복무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강정에서는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가 자주 목격된다.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를 공무집행방해라고 폭행하고 연행하고 있다.

[사례 2] 펜스 넘어간 성직자와 기자 등 10 여 명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10월 4일 구럼비에 펜스가 쳐지고 공사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펜스를 넘어 구럼비에 많이 출입하였다. 2012년 10월 4일에도 기자와 성직자들이 펜스를 넘어 구럼비에 갔다. 오후 3시 30분경 해군과 사복경찰 등 20여 명이 시위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가 기자와 9명의 신부를 지난 4일 서귀포경찰서로 연행하고 기자는 5일 오후 9시 15분에야 석방했다.

□ 문제점

출입금지 지역이라 할지라도 경찰에게 체포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권한 남용이다. 펜스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이유는 없으며, 기자를 연행하는 것은 취재방해이다. 더구나 기자임을 알면서도 연행한 것은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경찰 상부에서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3] 시험 폭파에 항의하며 면담 요청해도 연행, 해경 폭력행사

□ 사건개요

2011년 10월 6일 제주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구럼비 시험폭파를 하였다. 오후 2시 51분 시험 발파했으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3시 9분에 해양감시단 카약 타고 나갔고 3시 11분에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연행하였다. 이는 폭파간격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문규현, 이영찬 신부는 기지사업장에서 면담을 요청하였고, 해군 측에서 이를 거부했고 문 신부는 공사장 정문에서 들어가겠으니 관계자가 나오라며 밝힌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해양감시단은 시험폭파를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는데 해양경찰이 범대위의 불법공사 감시단 보트를 때려서 여자 2명이 물에 빠졌다. 해경은 물속에서도 격렬히 저항하던 이들을 건져 올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해상에서 1인 카약과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시위를 했던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6명도 서귀포해경에 의해 체포했다. 특히 해경은 고의적으로 고무보트를 들이받아 해상시위를 벌이던 주민과 활동가 2명을 바다에 빠뜨려 연행했다.



기지사업단 정문에서 사업단장 면담요청을 하다 연행되는 문규현 신부

▲ 사진출처: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2011.10.6



해양감시단을 연행하려는 모습

▲ 사진출처: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2011.10.6

[사례 4] 종교행사 중이던 사람들 연행

강정 기지사업단 앞에서 미사나 예배 등 종교행사를 보는 사람들을 연행하였다. 종교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공사차량 출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을 업무방해라며 연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종교행사 중 연행이 심각한 것은 종교행사가 거의 매일 이루어지므로 매일 체포의 공포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미사는 예배는 거의 매일 있고 현재까지도 주로 연행되는 경우이기에 주요 사례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 미사 보던 신부 무차별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9월 30일 공사장 앞 미사를 진행하던 종교인들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공사차량 출입으로 미사가 방해되어 이에 항의하던 이영찬 신부를 연행하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던, 박도현 수사와 문정현신부도 업무방해와 공무방해로 체포하였다. 특히 문정현 신



불법 연행되는 문정현 신부와 박도현 수사의 모습

▲ 사진 출처: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홈페이지

부는 불법공사를 알리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중이었다.

- 기도 행사하던 수녀 18명 포함, 총 29명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1월 10일 오후 3시부터 공사중단과 강정평화를 기원하는 ‘153 배 기원’을 올리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수녀들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자 해군기지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항의하며 “차량통행에 방해된다”며 기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수녀들은 “1시간만 기도를 올리고 바로 이동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연행하려 하자 마을주민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격렬하게 항의하며 제지했지만, 경찰은 수녀 18명과 신부 2명을 연행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참가한 활동가 청소년 4인 등도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평화롭게 기도를 드리던 수녀들이 연행되는 모습

▲ 사진출처: 헤드라인 제주, 2011.1.10

□ 문제점

종교행사마저 업무방해로 연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또한, 평화적인 행사였음에도 건설사 측의 요청으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법집행의 공정성마저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 종교행사가 1시간 정도임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종교의 자유 탄압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사례 5] 정치인의 정치활동도 제한하며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3월 7일 새벽 구립비 발파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 병력 1,000 명이 동원돼 무차별 진압하고 연행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항의하던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의 현애자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와 총선 제주도 을선거구의 전우홍 예비후보(진보신당)도 경찰에 연행됐다. 또 오전 8시 반쯤 경찰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여 강정주민들을 연행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 의원이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강정마을을 짓밟지 말라며 경찰에 강력히 호소했다.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려고 하자 “도민의 사유재산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려 하느냐”며 앞을 막아서며 강제진압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하는 김 의원과 약 10분간 승강이를 벌이던 경찰은 여경을 투입하여 김 의원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의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석방 조치했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김영심 도의원 모습

▲ 사진출처: 헤드라인제주, 2012.3.7

□ 문제점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로 과중한 범죄여야 한다. 더구나 선거 시기 예비후보를 연행한 것은 사실상의 정치활동 방해이다.

<3월 7일 구럼비 발파와 연행 등 상황일지>³¹

- 08시00분 : 강정천 인근에서 경찰 차량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으려던 현애자 전 국회의원, 여성활동가 2명 등 모두 3명 경찰에 연행. 이후 연행자 속출.
- 07시17분 : 동광리 소재 화약공장서 폭약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과 호송 경찰버스 차량 등 10여대 무리지어 공장 빠져나옴.
- 07시 15분 : 경찰병력 400여명, 주민과 잠시 대치 후 해군기지 사업장 안으로 진입중.
- 07시 : 강정 해군기지사업장 정문 인근 주민 저지선에서 방패,헬멧 무장한 경찰병력 실은 버스 진입 중
- 06시30분 : 바지선, 구럼비 해안에 바짝 다가선 후 정박중.
- 06시10분 전후 : 예인선이 대형 바지선 한 척을 끌고 안덕(서쪽)에서 구럼비 해안 쪽으로 접근중.
- 05시 56분 : 경찰, 동광6거리 주민차량 견인 완료
- 05시45분 : 경찰, 동광6거리 차량 견인 시작
- 05시15분 : 안덕면 화약 제조 공장에서 경찰차 1대-경찰 승합차 1대, 주민 저지선 뚫고 강정으로 출발.
- 05시 :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00여명. 강정 해군기지사업부지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 시작
- 04시45분 : 경찰병력 1개중대 구럼비 해안가에 투입. 사제 활동가 20여명 체포연행작전 시작
- 04시30분 : 강정주민 안덕면 화약공장 출입도로인 동광 6거리 인근서 차량 2대로 봉쇄
경찰, 화약공장 출입 전면 통제, 외곽도로 길목 경찰 배치
- 03시55분 : 해군기지 사업단 후문(풍림콘도~강정천 앞) 상황은 주민 차량 15대가 길을 막고 있고 주민과 활동가 50여명 집결.
- 03시40분 : 천주교 사제 10명, 활동가 10명, 취재기자 5명. 해군기지 사업부지 펜스 넘어 사업부지 내로 진입.
- 03시23분 : 마을 싸이렌 울린 직후 강동균 마을회장 긴급방송

[사례 6] 1인 시위조차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12월 23일 외교통상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제10차 제주 국제군축비확산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라호텔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2시쯤 신라호텔 측에서 사유지라며 물러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송강호 박사 등 평화활동가 3명을 퇴거불응죄로 연행했다.

□ 문제점

1인 시위를 하는 장소가 사유지일지라도 집회시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호텔은 공개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유지에 대한 주거 침입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의 1인 시위자에 대한 연행은 국제사회에 제주 강정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의적 체포이다.

[사례 7] 구럼비 출입하면 사유를 만들어서 불법연행

- 스티커 발부한다고 하다가 미신고 집회로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2월 18일 오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로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카약 등을 타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갔다. 특히 이날 대림산업 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구럼비 해안에 설치해 놓은 무대를 계고장이나 행정대집행 영장 없이 철거하려고 하였기에 이에 추가로 여러 시민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곧 100여 명의 경찰이 나타나서 생활안전계장의 스티커 발부 안내를 방송했다. 시민들이 그곳에 무단침입을 했고, 경범죄로 스티커를 떼어야 한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가 와서 말하라고 하자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였다. 집회로 보는 이유는 “현수막을 붙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해산한 사람들까지 연행하여 총 14명이 연행되었다.

<2월 18일 사건일지>

- 11시 : 강정포구에서 십수명의 시민들이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감. 이들은 구럼비 해안에서 커피등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노래를 부름
- 14시 : 건설업체 직원들이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 내려와 철거하겠다고

- 주장함. 이에 대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불법 행위임을 지적함
- 14시 20분 : 강정포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2명과 기자 2명이 구럼비 해안 진입. 건설업체 직원들 일단 철수함.
 - 14시 ~ 15시 : 개인적 차원에서 몇 명의 시민들이 관람의 목적으로 구럼비 해안 진입
 - 15시 10분 :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기자들 나옴
 - 15시 20분 : 건설업체 직원들이 경찰병력을 대동하고 나타남
 - 15시 30분 : 구럼비 무대위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접근하여 경범죄 위반임을 고지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
 - 15시 35분 : 경찰의 요구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 측 역시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 일부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범죄 스티커를 발급받는 절차에 들어감
 - 15시 40분 : 경찰책임자가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띤 불법집회임을 주장함
 - 15시 40분 : 이에 시민들은 집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집회물품도 없었기 때문에 왜 집회라고 규정하는 의문을 제기함. 경찰책임자는 이에 대해 '구럼비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지목하면서 현수막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은 집회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1차 해산명령을 내림.
 - 15시 45분 : 2차 해산명령. 이후 사람들이 해산하고 1명의 시민이 항의함.
 - 15시 50분 : 항의하는 시민 1명에게 3차 해산명령을 내림
 - 16시 : 경찰병력이 강제연행 준비와 동시에 건설업체 직원들 준비
 - 16시 05분 : 4차 해산명령과 동시에 시민 1명을 강제연행함
 - 16시 10분 : 이에 항의하는 신용인 교수와 고권일 위원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연행함. 건설업체 직원들 무대 철거시작.
 - 16시 25분 : 이미 해산하여 구럼비 바위쪽에 있던 시민들까지 추적하여 연행
 - 16시 40분 : 무대철거를 마친 건설업체 직원들 철수. 경찰병력 함께 철수
 - 16시 50분 : 연행자들 서귀포 경찰서 도착
 - 22시 : 연행자들에게 강제 석방 통보
 - 22시 10분 : 문정현, 문규현 신부 등 성직자 경찰서장 사과를 요구하면서 노숙농성 시작

연행자별 체포경위

- 사례 1. “왜 불법체포냐?”고 경비과장에게 항의하다가 체포된 경우 - 1명
- 사례 2. 주변에 산발적으로 해산한 후 각자의 볼일을 보고 있다 체포된 경우 - 2명
- 사례 3. 체포에 항의를 하다가 체포된 경우 - 2명
- 사례 4. 해산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며 도망가다가 체포된 경우 - 2명
- 사례 5. 체포 작전이 시작될 때 멀리 피해 있다가, 체포가 끝난 후에 불법철거에 항의를 하러 무대에 왔다가 체포된 경우 - 2명
- 사례 6. 사진 찍다가 체포된 경우 - 2명
- 사례 7. 체포기 시작되는(4시 12분 이후)이후 도착해서, “왜 이게 불법집회냐?”고 항의하다가 체포된 경우 - 1명
- 사례 8. 체포가 시작되는(4시 12분 이후)이후 도착해서, “왜 우리 물건을 철거하냐?”고 업체 직원들에게 항의하다가 체포된 경우 - 2명

- 구럼비에서 예배를 드려도 경범죄 위반으로 연행

□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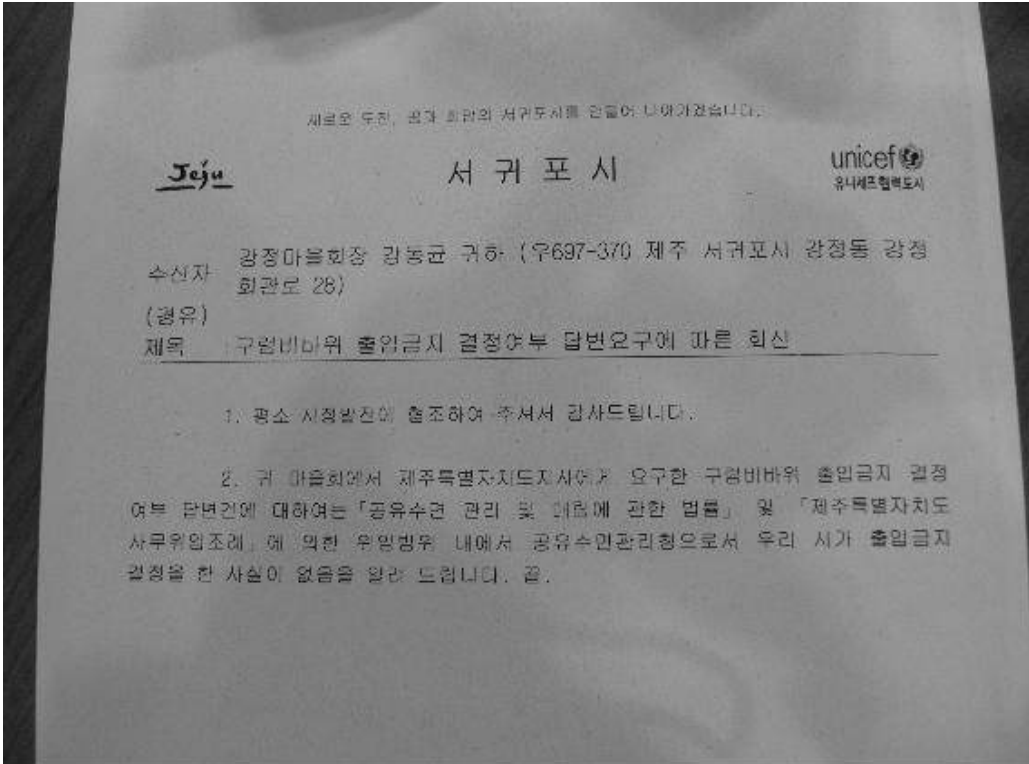
2012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비닐을 덮고 예배보고 생활하던 활동가 3명과 김성환 신부를 불법시설물로 고지하고 4명을 경범죄 위반으로 연행하였다. 결국 22일에는 박도현 수사가 배낭하나를 매고 구럼비에 들어갔다.

□ 문제점

구럼비 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권한을 가진 곳으로 제주도에서 ‘출입금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곳이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으로 이곳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은 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가능하다. 제주도지사가 아닌 자가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해군과 건설업체는 이를 알고도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는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무단침입 스티커발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신고 집회로 단정하고 연행을 시작한 것에 확인되듯이 구럼비에 들어간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체포를 목적으로 연행한 것이다. 경찰이 연행을 목적으로 법을 자의적 해석하고 집행한 위법하고 자의적인 체포이다.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 결정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서

▲ 사진출처: 강정마을회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불응죄 적용 위헌>

(대법원 2011 도 629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102.4.26)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전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 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 24조 제 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시법 제 20조 제 1항 2호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더라도 사전신고제의 규범력은 집시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사례 8] 사진 촬영하는 비참가자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4월 12일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인간띠 잇기를 하여 레미콘 차량을 막고 있을 때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모 인터넷 신문의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취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으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되었다. 또 2012년 6월 14일 b 씨는 다른 사람이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가 시위를 하자 경찰의 부탁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차량 근처로 갔다. 그러다가 다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결국, b 씨는 현재 제주교도소에 구속됐다.

□ 문제점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참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있었던 사람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참가자를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구속하였다. 이는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의 자의적 적용이자 남용이다.

4.3.2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행범으로 연행될지라도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에 급급한 나머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여성활동가들을 남성 경찰이 빈번하게 연행하여 성추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행범이든 아니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연행을 해야 한다. 연행은 처벌이 아니라 위법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연행이나 이송과정에서의 폭력은 위법할 뿐 아니라 사적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개인 신체의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강력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심각하다. 여기에 사례로 있는 것은 폭력의 정도가 센 경우만을 다룬 것이다. 실제 크지 않은 폭력은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도 일상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사례 1]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 사건개요

2011년 12월 26일 해군기지사업장 앞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다 26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이 집회해산 명령도 없이 무차별 연행하였으며, 연행 시 경찰은 기본적인 '미란다 고지'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여성시위자들이 여성경찰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남성 경찰관이 연행했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

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프리카 헌장>

6조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 당하지 아니한다.

<유럽인권협약>

5조 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불량자의 합법적 구금.
- f.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되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미주인권협약>

7조 2항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례 2] 체포과정에서 집단폭행, 모욕 행위

□ 사건개요

2012년 3월 21일 중덕 삼거리 근처에서 소수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시공사가 설치한 펜스를 밟고 있었는데, 펜스 안에 있던 경찰들이 갑자기 펜스를 뜯고 와락 몰려나와 순식간에 3명을 체포했다. 경찰 3~4명이 붙어 펜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j 씨를 방패로 둘러쌌다. 그 중 한 명이 j 씨의 목 뒷덜미를 잡고 왼쪽 팔을 꺾고 무릎을 차서 꿇게 하고 얼굴을 땅바닥에 닿게 하였다. 3~4개의 손이 뒷목을 세게 눌러서 호흡이 곤란해져 “질식한다, 질식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엎드려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엉덩이와 대퇴부를 찍었다. 경찰관 간부가 보여 “간부님 질식할 것 같아요.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으나 그냥 지나갔다. 그때 활동가 한 사람이 펜스 위로 얼굴을 내밀고 아이폰으로 j 씨와 그를 둘러싼 경찰들을 찍으려고 하자 경찰관 간부가 그 아이폰을 빼앗아 “야, 가져가버려.”라고 말하며 다른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 나중에 그 아이폰은 돌려받았으나 j 씨는 현재 펜스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문제점

현행범일지라도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 31 조(현행범인의 체포) 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8 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관련 규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례 3]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송강호 박사를 연행하면서 폭력

□ 사건개요

2012년 4월 1일 송강호 박사는 바다를 헤엄쳐서 구럼비 해안에 도착하여, 철조망을 밟고 구럼비 바위로 갔다. 그는 철조망을 밟고 지나갔을 뿐, 철조망의 지지대는 부러뜨리지 않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체포되었고, 군용차량에 실려 나와서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경찰차로 바꾸어 호송되었다. 경찰차로 바꾸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연행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저항했다. 차를 바꾸어 타는 과정에서 송 박사의 몸이 거꾸로 되어 그의 상체가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송 박사가 버티려고 차 밑의 부품을 손으로 쥐자 차체 바닥이 낮아 목이 차 밑에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 6명이 송 박사의 다리를 세게 잡아당겼다. 송 박사가 “목이 끼었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소리도 낼 수 없었으나 경찰들은 웃으면서 계속 다리를 잡아당겼다. 목이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치아의 날들이 부서졌

다. 목뼈가 “우두둑”하고 소리가 나며 마치 몸에서 목이 이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당시 5mm 두께의 수영복 후드가 목을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목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고, 3 바늘을 꿰맸다.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었고 목에 찰과상만 인정하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호송될 때 경찰차 안에서 고씨 성을 가진 경찰관에게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³²



폭력 연행 후 응급치료한 송강호 박사의 상처

▲사진출처: 강정마을회, 2012.4.1

▫ 문제점

육상으로 진입한 경우 불가피하게 해군기지 사업단을 경유해 구럼비에 진입해야 하므로 무단침입이 성립되지만, 해상으로 진입해 해상으로 철수한 경우에는 무단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단침입은 경범죄로 2만 원의 벌금을 내면 되는데도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하였다. 특히 송 박사에 대한 연행은 빈번하여서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송 박사가 구럼비 바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고문으로 볼 수 있다.

32 관련 동영상 , <http://youtu.be/KLdwjMP7iOc>

<고문방지협약>

1조 1항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례 4] 미행과 사찰 후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9월 1일 평화비행기 행사를 앞두고 3명을 미행하여 연행했다. 활동가 2명은 현재 구속된 활동가를 면회하기 위해 강정마을에서 제주시로 향했고, 경찰은 이미 강정에서 미행한 후 마을을 벗어난 시점에서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한 뒤 강제 연행한 것이다.

또 다른 활동가는 경찰이 직접 전화를 해 위치를 파악한 후 법원 인근에서 사법경찰 10여 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들을 강제 연행한 이유는 이들이 경찰서 출두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날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다음 주에 경찰서 출두를 약속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연행한 것이다.

□ 문제점

법적 근거 없는 연행일 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연행한 것은 의견표명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행은 9월 2일 구럼비에 펜스를 치기 전에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반대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단순우발적 강제연행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연행(강제구금)이기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정마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차단된 경찰감시마을이 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5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민으로서 법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형사소송절차법을 만들었다. 수사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도 받지 말아야 공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에 따른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수갑을 채우거나 치료권, 변호인 접견권을 박탈하는 것은 수사를 하나의 처벌로써 집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체포사유를 미고지하거나 조사관의 신분을 알리지 않기도 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치료권을 보장하지 않기도 했다.

[사례 1] 경찰 폭행으로 다쳤으나 치료권 박탈

□ 사건개요

2012년 4월 1일 연행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목과 치아, 얼굴을 다친 송강호 박사를 응급치료만 끝내고 바로 경찰서에서 수사했다. 송 박사는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수사를 바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목이 낀 상태에서 심하게 잡아당길 때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면서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고, 이가 부서져 치과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바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또한, 조사가 끝난 뒤 변호

사가 병원추가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석방을 거부하고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해 치료권을 박탈했다.

□ 문제점

송 박사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보석을 하지 않은 행위는 가혹 행위(형법 제 125 조)로써, 헌법 제 10 조(인간의 존엄성)와 헌법 제 12 조(신체의 자유)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 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 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 10 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를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국제형사개혁위원회, 1995)>

피구금자의 인권

- 개인의 생명과 온전성에 관한 권리
-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건강에 대한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
- 노예상태 하에서 살지 않을 권리
-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자기발전에 대한 권리

[사례 2] 수갑 채운 채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8월 9일 강정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범대위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는 중덕 해안가로 차광막을 비롯해 밥통과 식기 등을 실은 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이를 경찰이 제지해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필요한 통행제한에 항의하는 박 00 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다. 박 00 씨는 이송차에서부터 수갑을 채운 상태로 유치장에 들어갔다.³³

□ 문제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 조 2 의 제 2 항에 규정된 수갑 사용의 목적(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어긋나는 과도한

³³ 9월 이전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것이라 포함시켰다.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서에 와서 수사를 위해 수갑을 풀려는 모습

▲ 사진출처: 동글이(강정마을 평화지킴이) 영상 캡처

행위이다. 박 씨는 체포될 때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호송차에 스스로 올랐는데도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상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다. 도주우려나 체포에 대한 저항이 없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는데도 채운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임. 이는 인권위에서 수차례 권고한 사항으로 강정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6 해군의 폭력

해군이 평상시에 민간인을 폭행하는 것은 군 복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민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강정 앞바다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런데 해군은 공사시작과 함께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호할 시설물이 없다. 사실상 공사를 보호하는 경비보호업무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해군 특수부대인 SSU는 'Sea Salvage&Rescue Unit'의 약자로 심해잠수 최정예 특수부대로, 전쟁, 평상시 해난구조 작전, 항만 및 수로 상 천연인공 장애물 제거, 해난구조요원 양성 및 교육 훈련, 탐색 및 구조 작전이 임무이다. 하지만 그 임무와 상관없는 공사경비를 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군 폭력은 9월 이전에도 있었다.³⁴

[사례 1] 해군 소령과 SSU 펜스를 넘었다고 대학생에게 폭력과 욕설 행사

□ 사건개요

2011년 10월 2일 저녁 7시 무렵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에서 대학생 10여 명이 구럼비 바위를 보고 싶다며 펜스를 넘었다. 대학생들을 발견한 해군들이 물려와 목을 조르고, 팔

34 관련 동영상 (URL: <http://youtu.be/mGW8IZPM-VU>), 영상게시일: 2011.8.28

을 꺾고, 바닥에 던지는 폭행을 하고, 철조망에 허벅지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 살점이 뜯겼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 한 명은 실신해서 숨을 못 쉬어 응급차에 실려갔다. 특히 소령, 대령 등 해군 장교들이 앞서서 폭력을 행사했고,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대원들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여학생들을 성추행이 될 수 있어 여성경찰관을 요청했지만, 여학생들 목살잡이와 신체접촉을 하였다.

□ 문제점

강정 구럼비 바위는 공인된 군사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장일 뿐인데 해군이 군사작전을 할 이유가 없다. 해군은 현 상황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지만, 대인 강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또한, 대학생들이 공사장을 넘었다고 해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없는 단순 경범죄로 범칙금 2만 원만 내면 되는 가벼운 항의행동임에도 해군들이 몰려와 집단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여대생에게 성희롱도 했다.³⁵



해군이 대학생들을 둘러싼 모습

▲ 사진출처: 헤드라인 제주, 2011.10.4

[사례 2] 해군특수부대(SSU)의 송강호 박사에 대한 폭행

2012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송강호 박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새벽마다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드렸다. 구럼비 바위에 가는 것은 군사기지가 아니어서 해군이 이에 대해 폭

35 관련 동영상 (URL: <http://youtu.be/DPSEt-0ROUs>), 영상게시일: 2011.10.3.

력을 행사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해군은 송강호 박사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수중 폭력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위협이 있는데도 해군은 오히려 조롱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 사건개요

10월 2일과 3일, 4일 송강호 박사는 구름비 바위로 새벽 기도를 위해 수영을 해서 가는 중에 해군 SSU 대원에게 수중 폭행을 당하거나 오리발을 빼앗기는 등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폭행을 당했다. 수면 아래서 주먹과 무릎으로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계속 폭행하는가 하면, 숨을 못 쉬게 수면 아래로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수중 폭행은 30분간 계속되었다. 6차례 발차기를 하고 떨어뜨리면서도 해군은 “장난 좀 칩시다.”, “어, 어?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네.”, “어, 아직도 살아있네.”, “북한사람이냐” 등의 말로 조롱하기도 했다.



해군이 오리발을 빼앗는 장면

▲사진출처: 송강호 박사

[사례 3] 해양감시 활동하던 보트를 밀어붙이며 폭행

□ 사건개요

2012년 10월 6일 문화재 발굴 건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명시된 오탉수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럼비 시험발파를 했다. 게다가 구럼비를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태에서 구럼비 발파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평화활동가들은 구럼비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바다로 접근했다. 6인승 고무보트에 6명, 카누 두 대에 각각 1인씩이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해군의 SSU 단원들이 타고 있는 검은색 고무보트는 빠른 속도로 활동가들의 보트에 다가와 SSU 단원들은 그들의 배로 밀어붙이고 카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다른 카누와의 간격을 넓히게 했다. SSU 단원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물살과 포말로 카누를 조정하기 어려워져 바다 멀리 떠내려갔다.

1차 발파로 큰 소리와 분진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경고 없이 해경선이 다가와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두 명의 활동가들이 물속으로 빠졌다. 이 중 한 명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여서 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물에 빠지는 충격으로 잠시 쇼크에 빠졌고 이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한을 호소했지만 따뜻한 물이나 제대로 된 담요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카누 1의 조정자가 카누 2의 노가 한쪽이 고장 난 것으로 발견하고 그를 도와 강정포구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연행했다. 강정마을 소유의 고무보트와 한 평화 단체 소유의 두 대의 카누는 해경에 의해 압수됐고 8명이 연행되었으며 기차는 곧 훈방 조치되었다.

□ 문제점

발파가 일어나 바다의 진동이 전달되는 위험상황에서 해군이 카누를 들이받으며 해상으로 활동가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 그러한 일을 해군이 군사지역도 아닌 강정 앞바다에서 벌인 것은 해난구조와 상치되는 일이다.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7.1 일상적인 채증

강정마을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채증하는 모습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집회·시위가 아닌 종교행사,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채증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서 있는 모습도 채증의 대상이 된다. 사례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채증이 일상화되어 있어 주민과 활동가들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채증 행위에 대해 항의하다가 업무방해로 연행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한다. 특히 풍림콘도에서 평상시의 모습을 모두 카메라로 찍고 실시간 중계까지 한 사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경찰은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모든 활동을 과도하게 채증하고 있다.

[사례 1] 농로에 서 있는 사람을 채증

□ 사건개요

2011년 7월 24일 한 활동가가 경찰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찰병력 10명이 서 있는 곳에 들어가자 “채증하라”는 지시와 함께 채증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집회 중도 아니었고, 활동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농로 중간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

[사례 2] 길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채증

□ 사건개요

2011년 9월 30일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길 한쪽 편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을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채증했다. 이에 사람들이 “왜 길 건너편의 사람들을 채증하느냐”라며 항의하자, 경찰은 “경찰이 하는 일에 이의 달지 말라”며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경찰의 채증 모습

▲ 사진출처: 동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사례 3] 풍림콘도에서 몰래 채증하여 실시간 중계

□ 사건개요

2012년 9월 13일 풍림콘도 계단에서 카메라 한 대가 기지사업단 정문 쪽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한 활동가가 발견했다.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니 경찰이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설치하고 기지사업단 정문 일대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과거부터 이러한 채증 활동을 몰래 숨어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지사업단 앞에서는 집회가 있거나 경찰 병력이 출동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활동가들이 지나가는 올레꾼

들에게 해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충돌이 발생한 상황도 아닌 평상시의 모습들까지 모두 카메라로 찍어서 증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풍림콘도 계단에서 기지사업단 앞을 촬영하고 있는 경찰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9.13

□ 문제점

경찰의 「채증활동규칙」 제1 조에는 “경찰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위해 사태 발생 시에 범법 정황을 촬영하여 정확한 상황파악 및 사법 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증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활동인 채증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채증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또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촬영해 대규모로 자료를 수집해놓는 것 자체가 촬영거절권 등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채증활동규칙」 제2 조에는 채증이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서 경찰은 불법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광범위하게 채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7.2 사복 경찰의 채증

강정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채증 활동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복을 입은 경찰의 채증이다. 사복 경찰들의 시도 때도 없는 채증으로 인해 경찰과 주민 및 활동가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마치 올레꾼처럼 위장하고 몰래 채증을 하거나, 얼굴을 가리고 채증을 한다. 사복을 입은 경찰에게 소속과 성명을 묻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채증하여 자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복 경찰의 무차별적인 채증은 강정마을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농로에 서 있는 시민을 채증하는 사복 경찰
▲ 사진출처: 동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기자회견을 채증하는 사복 경찰
▲ 사진출처: 동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 문제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서 경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정마을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해군과 건설, 용역업체 직원들도 채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채증을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속이나 채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더욱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8 여성에 대한 폭력

역사적으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많이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특히 경찰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강정에서의 여성폭력은 2008년 촛불집회보다 심각하다. 남성경찰관이나 남성 해군, 남성 용역들이 여성을 연행하는 상황은 매우 비일비재하다. 연행과정에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폭력이 있었으며,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도 있었다.

[사례 1] 연행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

□ 사건개요

2012년 3월 9일 오전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여성활동가 5명을 남성 경찰들이 질질 끌고, 온몸을 만지면서 강제 연행하였다. 여성활동가 한 명은 상의가 벗겨져 항의했으나 경찰은 무시하였고, 여성활동가는 “이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여성 경찰관이 연행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저항을 했음에도 남성 경찰과 남성 용역들이 이 여성 활동가의 온몸을 더듬으며 강제 연행하였다.



여성 활동가를 남성 경찰관이 끌어내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3.9.



남성경찰관이 여성활동가를 강제로 끌면서 여성의 옷이 벗겨진 모습

▲ 사진출처 : 동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2012.8.15

[사례 2] 해군에 의한 성희롱

□ 사건개요

2011년 11월 7일 미디어 충청 정재은 기자는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선봉대와 함께 구림비 바위에 들어가 취재하다 1시간 20분 동안 해군에 억류했다. 해군은 자신의 항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아가씨냐, 아줌마냐”, “보도완장은 왜 차고 있느냐”고 성희롱 발언과 다른 해군 특수부대원이 “북한에서 내려온 기자냐”고 막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사례 3] 용역에 의한 성희롱

□ 사건개요

2012년 2월 13일 구림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사제와 목사, 신도 약 20명을 삼성과 대림 용역업체 직원들이 두 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위력을 행사했다. 문규현 신부 등을 구림비 바위에 주민들이 설치했던 무대를 불법 해체하는 삼성·대림 직원들을 바리케이드로 둘러쌌다. 이 과정에서 여성신도들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 성직자들이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³⁶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점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성추행을 하는 용역들을 보호하였다.

<국가인권위법 상의 성희롱 정의 규정>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36 용역에게 감금당하고 연행되는 과정에 대해 신도가 설명하는 영상. 제주의 소리, 2012.1.13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59>

<2007년 용역경비업체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인권위 권고>

직원인 피진정인이 회사의 직장폐쇄와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이던 2007년 9월 진정에게 “나중에 데이트하자,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등 성희롱함. 회사는 직원들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9 법에 대한 권리 침해

법에 대한 권리 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해군기지반대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무리한 법 적용과 법이 명시한 법적 권리에 대한 박탈이다. 정부와 경찰은 지속적으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견제를 하기보다는 부응하고 있다. 한편,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군과 경찰,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는 편파적인 법 적용을 하고 있다. 행정관청과 공무원 역시 해군기지건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거나 무리한 법 적용으로 해군기지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폭력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지만, 실제 강정에서와같이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기도 한다. 법적 평등은 법적으로 차별 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무권리 상태로 짓눌리지 않도록, 특히 지배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본권침해에 대해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

되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9.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이유로 반대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들도 대부분은 법을 근거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무리하게 법을 끌어다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게다가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법집행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자의적 법집행은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의 저항적 표현과 주장, 행동의 분출을 통제하기 위한 소위 ‘법질서 정책(law and order policy)’과 무관용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란 본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기본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원리로 정립된 것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공익을 위해 시민이 감수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법치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공익을 근거로 해서 시민의 저항적 표현과 활동을 규제하는 원리로 변질시킨 것이다.³⁷ ‘시민의 법에 따른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해 시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로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법과 질서의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자본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법원과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었다.

[사례 1]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 사건개요

2011년 7월 해군과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군 측이 공사방해로 특정한 피신청인 주민 중에는 반대운동에 단 한 번도 가담한 사실이 없는 주민이 5명과 반대의 뜻은 가지고 있지만, 병중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 중이라 공사 방해라고 특정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민 4명이 포함됐다. 피신청인을 지정한 근거 중에는 마을 의례회관 행사에 참석한 주민의 사진자료, 전·현직 공무원이 사업부지 내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었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과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인근 인도에 서 있는 주민, 해군과 함께 농로를 이동 중인 주민, 기자회견 등을 공사방해행위의 근거로 내세웠다.

³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7쪽, 2012.



마을 의례회관에서 회의참석 중인 주민을 공사방해 행위 가처분 대상으로 특정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8.23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공사방해 행위'로 규정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8.23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정부와 해군)이 소명자료 사진에 이름을 적시해 있지만, 피신청인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해 달라”며 “피신청인 변호사에게 소명자료를 교부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신청 당시 77 명이던 피신청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외돼 최종심리가 이뤄진 2011년 8월 22일에는 39명만 남았다.

2011년 8월 29일 제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해군기지 부지와 강정 앞바다 출입금지 등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상자는 강동군 마을회장을 비롯한 37 명이며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공사장 출입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해군기지 부지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 회당 2 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문제점

해군 측의 공사방해금지 가치분신청이 마구잡이로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신청 당시 77 명이던 피신청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외돼 최종심리가 이뤄진 22일에는 39명만 남았다. 가치분 신청이 얼마나 졸속이며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단체들(강정마을회,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개척자들, 생명평화결사)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치분 결정은 결정문에서 일체의 방해행위 가치분 대상으로 규정토록 신청한 것에 대해 포괄적 반대행위 금지 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체들을 가치분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피신청인 단체들이 현수막이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촉구함으로써 그 회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게 하고 있다고 적시하며 일례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평화 행동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³⁸을 공사방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전, 오후 1 시간씩, 제주시와 서귀포시 로터리 등 주요장소에서 1인 시위를 위한 모집하는 내용으로 공사현장의 방해 행위와 관련 없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포괄적 반대 행위 금지를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 하면서도 실제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군기지 반대의견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법원은 해군기지 터에 있는 컨테이너 구름비 사진관 등 강정마을 소유(야 5 당이 인도받음)의 시설물을 사업시행자인 해군이 시설물을 직접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명

³⁸ http://jejungo.net/main/?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422&sid=74184769ec9ce14c1ccae4f7287b06ff

시했다. 이것은 가치분 결정 바로 직전에 이뤄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와 상충한다. 법제처는 서귀포시가 낸 질의(2011. 6. 29)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권이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 또한 서귀포시장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8월 22일로 심리종결기한이 정해졌음에도 신청인 측은 8월 26일 재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청인의 서면에 대해 사실관계 등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측의 재반박을 담은 서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의 준비서면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해 신청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법원 결정의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전격적으로 결정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분 수용을 전제로 한 심리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종결기한을 넘겨 신청인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의견을 지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사례 2] 시설물 강제철거

□ 사건개요

2011년 9월 13일 해군제주방어사령관은 강정마을회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의 제주도당에 계고서를 보내 9월 16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이전 또는 철거하도록 통보했다. 해군이 자진철거를 통보한 시설물은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있는 컨테이너 1동과 망루 1동, 텐트 2동, 천막과 집기류 등이다. 해군은 시설물 방치가 공익을 해친다면 “통보한 기일 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고, 행정대집행 비용은 강정마을회 및 야 5당으로부터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 5당 제주도당은 중덕삼거리 시설물 안쪽으로 펜스와 철조망을 둘러친 만큼 이미 안전이 확보됐는데도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계고서상 7일 여유를 주면서 추석 연휴를 끼워 송달하는 행태는 사실상 자진 이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권리나 의무,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9월 27일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정진립 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야 5당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했다. 또한, 해군은 대집행 비용 484만 3,000원(용역비 120만원, 기타경비 364만 3,000원)을 개산액을 강정마을회와 야 5당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9월 29일 당일 행정대집행을 보류했었으나 이후 시설물이 영장 없이 해체된 것을 2011년 12월 8일에 확인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18일에는 대림건설의 인부들이 구림비 바위에 설치되어 있던 무대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무단철거의 소식을 듣고 온 주민과 활동가들이 철거에 항의하자 경찰에 연행되었다.



계고서 일부

▲ 사진출처: 참세상, 2011.9.14

□ 문제점

중덕삼거리 컨테이너는 약 5당이 마을주민의 고충과 피해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며, 망루는 펜스 안에서 이뤄질지 모르는 불법, 탈법, 편법 사례를 부단히 감시,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었다. 이 시설물 중 사진전시관은 해군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한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다.

이미 공사를 위해 시설물 안쪽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공사에 방해되거나 도로교통법이나 공유수면 무단점거의 위법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해군은 공익을 해친다는 주장으로 이 시설물들을 강제철거했다. 게다가 행정 대집행권자인 서귀포시청이 아닌 해군이 공사업체인 대림건설을 내세워 철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철거가 아니다.

2012년 2월 18일에 있었던 철거도 담당행정청인 서귀포시청의 계고와 대집행 영장의 통지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했다. 해군의 무단철거 문제에 대해 서귀포시청은 대집행권한을 가진 서귀포시가 대집행 권한을 해군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청은 어떤 이유로 자신의 업무를 해군에게 위임했는지 설명한 적이 없으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해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는 서귀포시청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면서 해군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이다.

[사례 3] 텐트철거

□ 사건개요

2012년 3월 26일 오후 3시경 강동균 회장과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에 자리를 잡고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도지사는 공사중지 명령 내려라”,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저녁 9시 45분쯤 2인용 텐트를 치려 하자 한 공무원이 “텐트는 도로법 45조에 저촉되므로, 10분 후에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소강상태가 되더니 밤 10시 5분쯤 200여 명의 경찰력이 제주도청 후문을 통해 들어오며 정문을 봉쇄해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20분쯤 도의회 편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성장 쪽으로 몰려들자, 도청 앞에 있던 경찰도 일제히 농성장으로 밀고 들어왔다.

경찰은 곧바로 시설물들을 짓밟으며 텐트 1개를 포위하듯 완전히 봉쇄했고, 그러자 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철거에 나섰다. 특히 철거하기 시작한 때에는 여성 4명이 텐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텐트를 5m 가량 바닥에 끌고 가며 막무가내로 텐트를 부수며 철거를 단행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텐트 안에 있던 여성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에도 아랑곳없이 무차별적인 강제철거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텐트 안에 있던 여성 1명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119로 긴급 후송됐다.

5분 정도 이들 여성 4명과 강동균 회장 및 시민단체 회원들을 꾀꾀 포위해 압박하며 철거작업을 끝낸 공무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의회 정문 쪽으로 물러서 멀뚱히 지켜봤다.

그러나 농성장을 에워싸고 있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항의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반강제적으로 끌어내며 연행을 시도해 다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단체 대표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몇 차례 반복적으로 벌어졌는데, 오영덕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끌어내기에 점퍼가 완전히 찢겨 나가기도 했다.

□ 문제점

공무원과 경찰이 천막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도로법 제 45 조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그리고 천막철거는 도로법 제 83 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제 84 조(공익을 위한 처분)³⁹ 3 항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에 설치된 2 인용 텐트가 도로법 제 45 조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괴(損潰)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결국, 제주도청은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어떤 반대의 표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도 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강정포구 동방파제 공유수면지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철조망에 대해선 수개월 동안 눈을 감고 있다. 강정포구 동방파제에는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주민과 올레꾼의 들어오지 못하게 불법 철조망을 20~30m 설치해 놓고 있다. 이 철조망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불법이다.

³⁹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회가 현장을 방문해 서귀포시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고, 서귀포시장이 직접 해군이 자진철거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군과 시공사는 불법 철조망을 철거하기는 커녕 보강 공사까지 벌이며 제주행정을 비웃고 있다.

9.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⁴¹ 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권리의 보장을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체포, 구속당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신체의 구속과 관련한 행위들은 엄격하게 최소화되어야 하며 구속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들이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965년 세계인권선언 9조⁴²에 관한 유엔 연구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절차나 근거에 따르거나, 사람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법률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때 체포나 구금은 자의적”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즉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사실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법적 권리에 대해서 법 집행자가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적인 법 적용과 더불어 법적 권리의 박탈이 모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면서 법적 구제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여기서는 신체의 구속과 관련한 법적 권리의 침해 사례를 다루었다.

[사례 1] 체포적부심 권리 박탈

□ 사건개요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려고 하니 서귀포경찰서는 연행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서류를 자신들이 송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대리인이 직접 제주법원으로 가져가 접수하게 되었다.

□ 문제점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면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인 등이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 214 조

40 세계인권선언 제 6조

41 세계인권선언 제 7조

42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의 2 제 2 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그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 자신이 청구하는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겠다고 하고, 작성한 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즉시 접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이 묵비권을 이유로 체포적부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는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사례 2] 무리한 영장청구

□ 사건개요

2011년 10월 6일 해군의 구럼비 바위 발파 시험에 항의하기 위해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던 종교인, 평화운동가 등 모두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해상 시위를 벌이던 8명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김 00 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10월 9일 김 00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00 씨에 대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 문제점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201 조 제 4 항). 그러나 구속수사에 익숙해져 있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해 왔었고 이로 인한 인권의 침해와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어 온 것에 대한 비판에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확립하였다.⁴³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은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2 헌마 193). 이처럼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헌법정신에 따라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수단을 취해야함에도 해군기지 반대입장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⁴³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 6. 1. 개정, 법률 제8435호)

2011~2012 년 6 월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 일시	인원	구속영장 내용
'11. 04. 08	1명	·업무방해, 폭행
'11. 05. 21	1명	·업무방해
'11. 07. 17	2명	·업무방해
'11. 08. 26	3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1. 09. 04	4명	·공무집행방해
'12. 02. 02	1명	·업무방해
'12. 03. 11	2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2. 03. 31	1명	·공무집행방해
'12. 04. 03	1명	·업무방해
'12. 06. 15	1명	·업무방해

출처: 경찰청, 장하나 의원실 정보공개청구(2012)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17명이 발부되고 14명이 기각되었다. 약 45%의 기각률을 보이는데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연간 평균 23%~24%의 기각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기각률이다.

[사례 3] 피구금인 면회금지

□ 사건개요

양윤모 씨는 2012년 1월 30일 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제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제주교도소는 2월 말부터 수감자 중 양윤모 씨에 한해서만 기자의 면회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시사주간지인 [시사인]에서 취재차 양윤모 씨를 면회하려 하자 제주교도소 총무과 관계자는 “해군기지처럼 민감한 이슈를 언론이 부풀려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윤모 씨의 언론 접촉을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회를 금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⁴⁴

□ 문제점

구금시설은 외부와 특성상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구금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인권침해나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해

⁴⁴ 시사인 233호 <사회·문화> 구럼비 바위는 이미 전쟁터, 2012.03.0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4>>

야 하며, 그 원칙이 지켜져야만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피구금인 인권에 대한 원칙들을 세웠는데 1955년 제1회 UN 범죄방지회의에서 채택되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다.⁴⁵ 이 규칙은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교정시설에서의 수형자 처우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오늘날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 규칙 제4조 제1항⁴⁶은 모든 범주의 수용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교통에 대해 제37조에서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UN 총회는 피구금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두 개의 결의를 했다. 그 중 하나인 「모든 형태의 억류 혹은 구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⁴⁷은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원칙적인 수호를 기본으로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존중, 수형자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의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의 원칙 19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만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국제인권원칙은 외부와의 교통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구금상태가 외부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내 법률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접견에 관한 조항인 제41조에서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⁴⁵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년 8월 30일,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 <<http://www2.ohchr.org/english/law/treatmentprisoners.htm>>.

⁴⁶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놓인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criminal)이든 민사범(civil)이든, 미결수(untried)이든 기결수(convicted)이든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⁴⁷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88년 12월 9일 채택. <<http://www2.ohchr.org/english/law/bodyprinciples.htm>>.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양윤모 씨는 위의 4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음에도 단지 언론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면회를 금지했다. 이는 양윤모 씨의 외부와의 교통의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한 것이다.

교도소 직원은 수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든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상실한 하등의 인간으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수용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항상 잘못된 행위이다.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들도, 자유를 박탈당한 일의 명확한 결과로서 상실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⁴⁸

[사례 4]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

□ 사건개요

2012년 3월 9일 성직자와 평화활동가들은 강정사거리에서 중덕 삼거리를 지나 강정포구로 이어지는 구간에 20미터 높이의 펜스를 뚫기 시작했다. 이들은 펜스 하단부에 펜치 등의 기구를 이용해 1m 내외의 구멍 3개를 뚫고 곧바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진입 목적은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 설치지이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에 쓰일 화약 해체작업을 하려 했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연행되었다.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성직자와 평화활동가 29명에 대해 경찰은 재물손괴와 무단침입을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월 11일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이정훈 목사, 김종술 목사, 김정옥 신부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6명은 석방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정훈 목사와 김정옥 신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종술 목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정옥 신부와 이정훈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김정옥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이정훈 목사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사제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48 앤드루 코일, 교도소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 교도관을 위한 지침서

□ 문제점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성직자 평화활동가 29 명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직접 재물손괴를 한 사람은 1-2 명이며, 나머지는 단순히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상 무단침입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경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당시 29 명 모두가 형사소송법 211 조에 따른 재물손괴에 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범죄처벌법의 제1 조 49 호의 무단출입⁴⁹에 해당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 214 조에 의해 주거가 불분명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범칙금납부통고로 처리해도 되는 경미한 사건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⁵⁰ 내지 제213조⁵¹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제6조 (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49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51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와 관련한 판례로 대판 94 도 3016 에는 형사소송법 제 211 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다. 또 대판 2001 도 300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 2 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촉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체포되었던 29 명 중 26 명이 석방된 것이 이들이 당시 직접 재물손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단 연행하고 조사해서 아니면 석방하는 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고 있다.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의 자의적 적용

경찰은 기지사업단 앞에서 종교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업무방해라면서 자의적 체포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나 해군, 건설사 용역경비들이 폭력을 자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는 구럼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지사업단 근처가 아닌 장소에서도 업무방해라고 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업무방해라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자의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라며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위법한 공무수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강정에서는 경찰이 공무수행이라고 하면 경찰권한이 아닌 것도 시민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어, 이에 항의하면 연행되는 등 경찰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10.1 업무방해의 남용

강정에서 현재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43 명이며, 민법상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도 별도 진행 중이다.⁵² 또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이 대부분 업무방해라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1 명 중 25 명이 업무방해죄이다. 실제 김 00 씨는 레미콘 차량을 막는 현장을 촬영만 하고 있었으나, 업무

⁵² 2011년 11월 4일 우창해사가 청구한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은 강동균 외 13명이다.

방해의 준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장을 촬영한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준현행범도 성립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여 인용되기도 했다.

업무방해(형법 314 조)의 자의적 적용은 강정에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적용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아매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1~2012년 6월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 일시	인원	구속영장 내용
'11. 04. 08	1명	·업무방해, 폭행
'11. 05. 21	1명	·업무방해
'11. 07. 17	2명	·업무방해
'11. 08. 26	3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1. 09. 04	4명	·공무집행방해
'12. 02. 02	1명	·업무방해
'12. 03. 11	2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2. 03. 31	1명	·공무집행방해
'12. 04. 03	1명	·업무방해
'12. 06. 15	1명	·업무방해

출처: 경찰청, 장하나 의원실 정보공개청구(2012)

[사례 1] 사업장 앞에서 종교행사 중인 종교인들 체포

□ 사건개요

2012년 1월 10일 제주해군기지사업장 앞 기도하는 수녀님들을 서귀포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연좌한 수녀님들은 물론 옆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는 ‘공사업무’에 관계없는 시민까지 체포하였다. 길 한쪽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 집회 해산명령을 하는 경찰이 욕설과 위협을 해서 항의하자 동료경찰들이 밀어붙였다. 공사장 앞에서 저항을 춤으로 표현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이들은 교통방해 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 방해가 안 되게 알아서 피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물려든 경찰들이 춤춘 학생 전원을 체포했다. 시민 체포에 분노한 양운모 선생이 연좌하자 체포했다. 이날 수녀 22명과 활동가 5명, 학생 4명이 체포됐다. 학생들은 당시 춤을 추기만 했는데도 업무방해라며 연행했다.⁵³

⁵³ 관련 동영상 <<http://youtu.be/UAh2JSrnf3l>>, <<http://youtu.be/5IntV905rwwg>>

[사례 2] 구름비에서 예배를 드려도 업무방해

2012년 2월 3일 오후 4시 15분께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안 구름비 해안에서 100 배를 올리던 박도현 수사, 오철근 씨, 여성평화활동가 등 5명을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은 연행했다. 구름비 해안에서 100 배를 하자 경찰은 5명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이들은 해안을 이용해 갔기 때문에 공사장 부지를 경유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침입이라며 연행하였고, 연행 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전에도 구름비에서 모여서 춤을 춰도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두어 연행했다.⁵⁴

□ 문제점

종교적 행사나 노래와 춤 등 평화적 표현행위조차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한, 업무방해는 재판에 따라 형량이 많아 현행범 체포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이후 벌금도 높아 항의하는 주민이나 마을회의 활동을 묶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례 3] 해군기지 사업단장 면담요청도 업무방해

□ 사건개요

2011년 10월 6일 해군의 구름비 바위 발파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천주교 문규현 신부와 이영찬 신부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해군기지 사업단장을 면담하겠다고 요청했다. 오후 2시 50분경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문규현 신부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 문제점

문규현 신부가 분명하게 해군기지 사업단장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사업단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 업무방해 적용은 해군기지라는 공공사업을 담당하는 기지사업단장이 면담이라는 공적 요청을 거부하는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업무방해를 적용한 것일 뿐이다.

[사례 4] 촬영자를 업무방해로 체포

□ 사건개요

2012년 4월 13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에서는 미사도 있고 백배도 있다. 반면 공사차량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사가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행사 중 업

54 관련 동영상 <<http://youtu.be/5IntV905rwwg>>

무방해 적용은 남용이다. 대부분의 연행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지사업단 앞에서 공사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해서 백배나 미사 참여자들은 자주 촬영을 하게 된다. 더구나 김 씨는 사람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는 현장을 촬영만 하고 있었으나, 업무방해의 준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결국,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사례 5] 계고장없이 컨테이너 철거하는데 항의하자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3월 22일 새벽 2시 송강호 박사 등 2인이 해군기지 사업단 인근에 기독교 장로회 강정마을 기도소로 사용할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였다. 컨테이너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라면서 이를 저지해 1시간가량 대치하였다. 경찰이 컨테이너를 계고장 없이 강제로 치우려 하자 송 박사 등이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경찰은 송 박사 등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문제점

철거의 권한이 없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물 철거권한은 시청 공무원에게 있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자 연행자를 석방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행을 하여 사실상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

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문제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조차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이다. 특히나 정부와 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의 불균등함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비판의 자유, 행동의 자유까지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형평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몇 명이 모이기만 해도, 특별한 위험한 도구를 들지 않아도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고 업무방해로 현행 체포하는 것은 법의 자의적 해석이다. 이는 “사회적 상당성” 내지 “허용된 위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그 일반조항적 성격으로 인해 적용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필자가 업무방해죄의 적용사건을 분석해본 바로는 업무방해죄는 쟁의행위나 소비자운동과 같은 기본권행사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권력적 수단이 되는 외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대부분의 행위들은 다른 구성요건에 의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무의미한 행위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형벌권을 개입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들이다.”⁵⁵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3차(E/C.12/KOR/CO/3, 2009.12.17.)

19. 위원회는 주로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에 근거한,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기소 및 파업노동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사례가 빈번함을 매우 우려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권이 당사국에서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음에 대한 그 우려를 반복한다. (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의 사용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ILO협약 제87호(1948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1949년)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0.2 공무집행방해의 자의적 적용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된다. 특히 아주 경미한 저항행위조차 공무집행 방해라며 강경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 1] 경찰에 항의하다 코를 잡았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1월 17일 공사장 앞에서 불법좌회전을 하는 레미콘을 사진 채증하고 있는데 이를 경찰이 가로막았다.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항의하자 사람들을 경찰이 둘러싸고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연행자들이 발생하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경찰에게 항의하는 중에 코를 잡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었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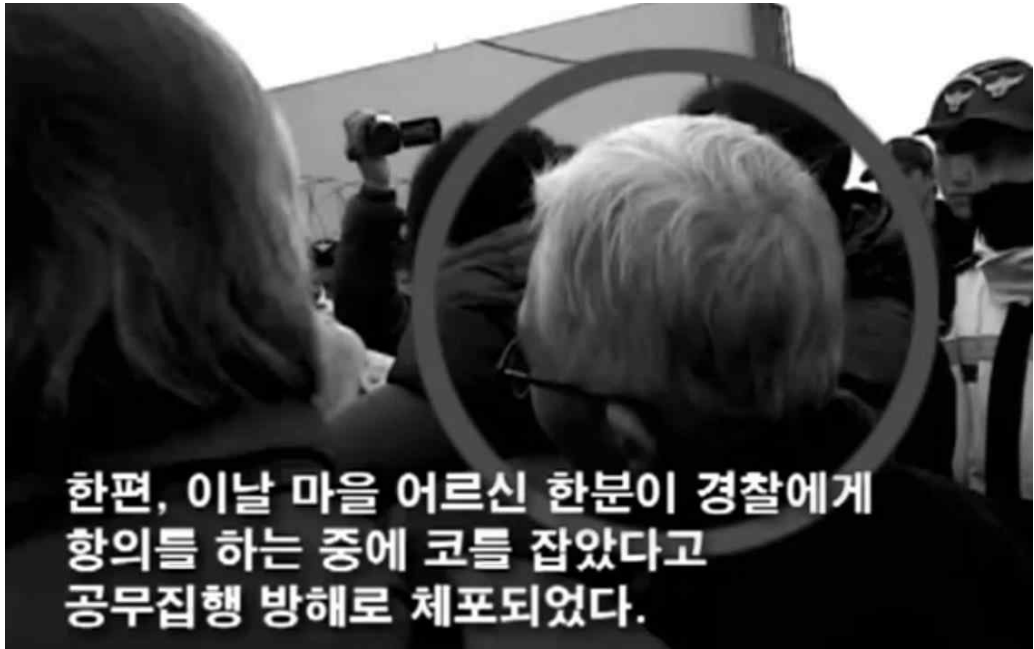
□ 문제점

형법 제 136 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

55 이호중, 노동자단체행동권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1.11.5.

56 관련 동영상 <<http://youtu.be/SMQdFvhSnSw>>

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 506 판결). 그러나 앞서 경찰이 행한 감금 및 해산명령과 체포는 부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항의하며 경찰의 코를 잡은 것을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다 코를 잡았다고 연행되는 모습

▲ 사진출처: 등글이 (강정마을 지킴이)

[사례 2] 부당행위에 항의하던 활동가를 자택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

□ 사건개요

2011년 10월 12일 성직자들이 부당한 공사진행에 항의하며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에서 레미콘 차량 출입을 막았다. 이에 경찰이 성직자들을 둘러싸고 성직자들을 끌어냈다. 이에 항의하던 여성활동가를 끌어내려던 경찰의 손을 깨물었다. 그런데 상황이 종료된 후 여성활동가를 자택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했다.

□ 문제점

경찰이 성직자들을 끌어내려는 것에 항의하는 중에 벌어진 일을 6시간이 지난 후 자택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는 것은 무리한 연행이다. 이미 경찰이 성직자들을 기지사업

단 정문에서 끌어내 공무가 수행되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는 것은 사실상 연행이 하나의 처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활동가가 주거가 분명하므로 소환장을 발부해 조사하면 되는 것으로 연행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서도 어긋난다.

▲ 관련 자료

[세계파이낸스]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에게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이 사건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영도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도2283, 판결]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요지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도506, 판결]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판결요지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영장없이 검색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검색행위를 방해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판결요지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검색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태로워지므로 많은 인권지킴이, 평화활동가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도 평화권을 보장받기 위한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해군, 건설사들은 일상적으로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인권옹호자들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탄압받고 있다. 그래서 1998년 12월 9일 유엔총회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결의안 53/144)한 데 이어, 2004년 4월 선언의 이행을 감사지원하기 위해 ‘인권옹호자 특별대표부’를 설치했다(결의안 2000/6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권운동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국가가 나서 인권침해를 적절히 막지 못할 경우 인권활동가가 최후 보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권활동가는 자신이 펼치고 있는 인권옹호 활동으로 정치적 표적이 되는 등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된 만큼 각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인식이다.

하지만 강정에서 인권옹호자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에 대해 경찰이 어떠한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다.

[사례 1]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에 4일간 55명 연행

2102년 3월 6일 서귀포 경찰서장은 우근민 도지사의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립산업 등 해군기지 시공사가 신청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구럼비 발파 허가가 난 후 평화활동가들이 발파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을 하자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55명이 연행되었다.

- 화약고 앞에 운반 저지하던 활동가들 4명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3월 6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43톤의 화약이 보관되어 있는 동광리의 (주)제주화약 앞에서 화약운반을 감시하던 평화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총 4명의 연행자 중 2명은 화약운반을 막기 위해 차량을 길 가운데 세웠다고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차 안에 있는 박 00 씨는 경찰 4명이 사지를 들어 연행되었으며, 차량을 이동시킨 신부도 연행되었다. 주민과 기자 등 7명을 경찰 30여 명이 둘러싸고 밀어붙이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찍던 임호영 활동가의 발이 후진하던 경찰 승합차에 깔렸다.

□ 문제점

도로를 파괴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어 형사소송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하더라도 경범죄여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 강정천과 구럼비에서 발파 저지하던 활동가들 20명 연행



기지사업단과 강정천 근처에서 쇠사슬로 묶고 연좌한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3.7

2012년 3월 7일 오전 4시 성직자 10명과 활동가 5명, 취재진 5명 등 20여 명이 펜스를 들어 올리고 구럼비 바위로 진입했다. 또 다른 활동가들은 강정천과 강정교 입구 차벽 앞에서 쇠사슬을 묶고 저지선을 만들었다. 오전 7시 마을로 진입한 경찰이 저지선을 뚫고 구럼비로 진입해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방해로 연행했다.

- 해양 활동 폭력과 카약 출항 금지

2012년 3월 7일 평화 활동가 2명이 탄 카약을 해경 보트 수척이 들이받아 전복시켰다. 2012년 3월 7일~9일 해경은 강정포구에서 카약이 나가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 구럼비에 진입한 활동가 다수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3월 9일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구럼비 육로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29명의 활동가를 연행하였다. 성직자와 활동가 29명을 7시간 동안 억류하다가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때 건설업체 직원들과 경찰들의 폭력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특히 남성경찰들에 의한 연행에 저항하는 여성들에 대해 강제연행을 시도해 상의가 들춰지고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결국 강제연행을 했다. 온몸에 진흙이 묻은 채로 연행된 여성이 서귀포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찰에게 샤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도움을 줄 필요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 문제점

구럼비는 공유수면으로 해군기지 공사 예정지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해군소유의 땅이 아닌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므로 구럼비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장을 통해 이동하게 되면 무단침입으로 경범죄가 성립할 뿐이다. 공유수면인 구럼비에 진입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무단출입한 것이 불법적 행위라 해도 경범죄 2만 원의 벌금을 내면 되는 경미한 범죄임에도 경찰은 무리하게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인권옹호자 선언문’의 핵심적인 정신은, ‘모든 사람은 인권의 증진,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인권침해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옹호자들은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사례 2] PVC 파이프를 사용한 비폭력 저항에 망치질로 신체 위협

□ 사건개요

구럼비 발파가 확정된 후 인권옹호자들은 생태계와 평화적 삶을 파괴하는 구럼비 발파 작업에 온몸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 3월 19일 화약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가 10여 명이 각자의 팔을 PVC 파이프를 이용해 연결했다. 경찰은 PVC 파이프를 망치로 두들겨 부셨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 다수가 팔과 손에 부상을 당했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연행 상황을 기록하던 시민의 팔을 꺾고, 신속한 체포를 위해서 발을 걸어서 넘어트렸다. 바리케이드 밖에 서 있던 시민을 체포하려는 것에 항의하던 시민을 밀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다.⁵⁷

57 관련 동영상 <<http://youtu.be/nePsvG6pV2E>>



화약고 앞에서 활동가들이 PVC파이프로 연결하여 연좌한 모습

▲ 사진출처: 동글이(강정마을 지킴이)

□ 문제점

경찰은 이와 같은 평화적인 직접행동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논의하며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3 시간도 안 되어 바로 폭력적 해체작업을 하면서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망치질을 해서 활동가들이 부상을 당했다.



망치 사용으로 인해 손이 다친 모습

▲ 사진출처: 동글이(강정마을 지킴이)

[사례 3] 구럼비 발파 막기 위한 인간방패활동 연행

2012년 3월 21일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구럼비 해안 폭파를 위해 사상 최대의 화약 장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구럼비 해안을 지키기 위한 주민과 활동가들의 ‘인간방패’ 활동을 전개했다. 대림산업은 구럼비 바위 진입을 막기 위해 허가도 받지 않고 철조망을 설치했고, 활동가들은 다치는 것을 감수하고 철조망을 넘어 구럼비에 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육상과 해상에서 구럼비로 들어가려던 시도 중에 경찰과 충돌하면서 연행됐다. 3시 30분경 강정 주민 1명은 수영을 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했다.



건설사에서 허가 없이 구럼비 해안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3.21

[사례 4] PVC 파이프로 엮은 인간띠를 에어튐으로 절단 후 연행

□ 사건개요

2012년 4월 16일 오후 1시 40분부터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과 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 2곳에서 렌터카 차량을 주차해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출입을 막자 연행되었다. 또한, 활동가들이 PVC 파이프에 팔을 끼워 넣어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차량을 막자 바로 경찰 투입이 되었다. 의료용 ‘에어튐’을 119 소방대원들에게 부탁해 파이프 절단하는 위험한 일을 경찰은 자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문규현 신부가 쓰러지기도 했다.



경찰이 소방관을 시켜 PVC 파이프를 에어톱으로 절단할 때 활동가가 절규하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3.19

□ 문제점

공사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이 며칠 동안 이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료용 에어톱을 무리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경찰 스스로 시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와 같은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강조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일이다.

12 언론의 자유 침해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은 해군과 경찰들에 의해 취재를 방해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자증을 보여주고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무차별적인 연행을 일삼고 있다. 해군 역시 취재하던 기자를 억류하고 사진 삭제를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언론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서도 집회 시위 시 언론사의 기자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경찰과 해군의 취재방해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헌법>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례 1] 경찰이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

2011년 9월 6일 오후 3시 25분경 강정마을 풍림콘도에서 국회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소위 위원장에게 면담 결과를 묻기 위해 다가서는 KBS 제주지회 김 00 기자를 밀고 팔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모 방송사 기자는 안경이 깨지고, 모 인터넷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파손되었다.



서귀포경찰이 취재기자를 밀치는 등 취재 방해를 하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1.9.6

[사례 2] 기자에게 사진 삭제 강요, 휴대전화 사용 막고 연행

2011년 10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취재하던 미디어충청 정 00 기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사방해’를 이유로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자를 향해 “기자가 아니라 무단침입자다”, “자칭 기자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해군과 경찰은 정 기자에게 취재한 사진을 지울 것을 강요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례 3] 해군이 기자를 억류하고 성희롱과 폭언 및 취재방해

2011년 11월 7일 미디어충청 정 00 기자는 취재를 위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가 1시간 20분 가량 해군에 억류되어있었으며, 촬영한 사진을 지울 것을 강요당했다. 해군은 정 기자의 항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아가씨냐, 아줌마냐”, “보도완장은 왜 차고 있느냐”고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며 취재를 방해하였다.

[사례 4] 기자증을 보여줬음에도 연행한 경찰

2012년 3월 12일 강정포구 동방파제에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성직자와 평화활동가 50여명이 구럼비 바위로 들어갔다. 경찰은 경고 방송과 함께 무차별 연행을 시작하였다. 한겨레신문 박 00 사진기자는 '기자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연행되었다. 경찰은 박 기사를 서귀포서로 호송한 후 신분을 확인하고 석방하였다.

13 국제 평화활동가 · 인권옹호자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13.1 입국금지

2012년 9월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국제 평화활동가 · 인권옹호자들의 입국금지 건수는 총 23건에 이른다. 이는 현재 파악된 숫자로 실제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국금지 사유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이의신청 요구를 거부당하고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억류당하는 등 인권침해도 발생했다.

입국금지 사례 중에는 일행 중에 과거에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이들만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강정마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강정마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가들을 광범위하게 입국금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케 한다. 특히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하고 3월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이후, 그전까지는 문제없이 입국했던 이들도 차례로 입국이 금지되는 등 입국금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위배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국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⁵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의 국적과 사유를 포함하는 입국금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법무부는 입국금지자의 국적과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사례 1] 2011년 8월 26일: 일본인 2명 (제주공항)

□ 사건개요

일본의 아시아공동행동(Asian Wide Campaign, AWC) 간사인 사코다 히데후미와 야마구치 유키코가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제국주의 및 군사기지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일 공동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코다 히데후미는 어린 아들을 대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일 출국했고, 야마구치 유키코는 3일간 억류되어 있다가 8월 28일 강제 출국됐다. 사코다 히데후미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둔 8월에도 입국 금지된 적이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한국에 입국했으나, 8월 다시 입국 금지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금지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으나,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또한 야마구치 유키코는 당시 국제포럼에서 통역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바로 귀국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례 2] 2012년 1월 28일: 일본인 2명

□ 사건개요

AWC 캠페인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려던 AWC 국제 사무국장과 AWC 일본 연락회의 공동대표 등 2명의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출국됐다. 이들은 2011년 8월, 해군 기지건설 반대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AWC 일본 연락회의에서 조직했던 제주도 평화투어에 참가했었다. 반면 투어에 참가하지 않았던 AWC 회원들은 모두 입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AWC 국제 사무국장에게 “당신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⁵⁸ 한겨레 < 한국 정부 입국거부는 강정마을 인권유린의 해외노출 의식한 탄압> 2012.09.0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905.html

[사례 3] 2012년 3월 14일: 미국인 3명 (제주공항 및 제주행 비행기)

□ 사건개요

강정마을을 방문하려던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회원 엘리엇 아담스 전 회장, 타락 카우프, 마이크 헤스티 등 3명의 입국이 금지됐다. 엘리엇 아담스와 타락 카우프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금지됐으며, 마이크 헤스티는 육지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10분 만에 끌려나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되어 있었다. 이들의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⁵⁹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락 카우프는 “우리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강정 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 4] 2012년 3월 27일: 일본인 2명 (부산 국제터미널)

□ 사건개요

관광 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교사 나카무라 스가에와 그의 딸 나카무라 하루카의 입국이 금지됐다. 한편 이들과 동행한 다른 일본인 1명은 문제없이 입국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아닌 천안 독립기념관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도 입국이 금지되었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들에게 “지난해 8월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한국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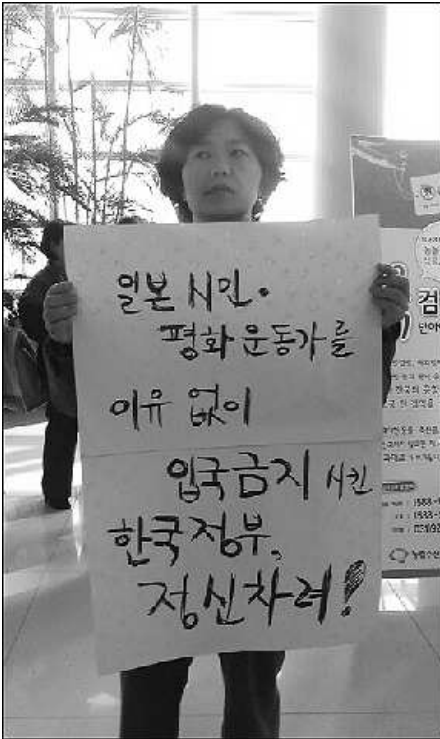
[사례 5] 2012년 3월 31일: 일본인 1명 (제주공항)

□ 사건개요

강정 평화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일본 평화포럼 소속 활동가 류지 야기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섯 시간이 넘도록 억류되어 있다가 강제 출국됐다. 류지 야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정을 방문했으나, 갑자기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는 정확한 입국금지 사유와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물었으나 전혀 대답을 듣지 못했고 현장에는 일어가 가능한 담당자도 없었다. 이에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지인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그에게 “입국금지의 사유는 일본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물으면 잘 알려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59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주공항에서 이루어진 1인 시위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3.31

[사례 6] 2012년 4월 2일: 일본인 1명 (제주공항)

□ 사건개요

제주 4·3 항쟁 위령제와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음악가 우미세도 유타카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례 7] 2012년 4월 6일: 일본인 1명 (인천공항)

□ 사건개요

오키나와 평화활동가 토미야마 마사히로가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방한했으나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는 90년대 후반부터 매년 4~5 차례 한국을 방문해왔으나 입국금지 처분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에게 입국금지 사유를 일절 고지하지 않았다.

[사례 8] 2012년 6월 5일: 일본인 1명 (인천공항)

□ 사건개요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소속 평화활동가 아리메 유우리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나 입국이 금지되었다. 아리메 유우리는 ‘후텐마 미군기지 폭음 소송단’에서 활동하며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심포지엄이나 DMZ 투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해왔으나, 처음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1년 12월 강정마을에 방문해 촛불문화제 등에 참석했는데, 만약 그것이 입국금지 사유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례 9] 2012년 6월 29일: 일본인 1명 (제주공항)

□ 사건개요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려던 AWC 회원 오오우치 테루오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 역시 1월에는 문제없이 입국했었다. 그 동안 입국 금지된

AWC 일본 연락회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2011년 8월 제주도 평화투어에 참여해 강정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사례 10]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간 중 입국금지

□ 사건개요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간 중 외국 활동가 총 9명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 9월 4일 새벽, 제주지킴이긴급행동위원회(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 회원 1명이 인천공항에서 입국불허 처분을 받아 30분 만에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재미교포인 그는 한국에 노부모가 살고 있어 그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했었고, 이번에는 WCC에 공식 초청되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활동가가 워싱턴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⁶⁰ 그러나 정작 그는 워싱턴 집회에 참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9월 5일 12시경 제주공항에서 일본인 평화활동가 류지 야기의 입국이 금지되었고, 연이어 오후 4시경에는 인천공항에서 오키나와 평화활동가 3명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이날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일본인 4명은 민주통합당 김재운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자평화네트워크 등이 주최하는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 차 한국에 방문했으며, 국회의원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도 지참한 상태였다. 이들은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물론이요, 초청한 의원실이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까지 공항에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20분 일본행 비행기 편으로 강제 출국됐다.

- 9월 6일에는 일본인 활동가 2명과 나이지리아 활동가 2명이 입국을 금지당해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일본인 활동가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회원단체인 ‘Save the Dugong’의 대표와 회원이었는데도 입국이 금지되었다.

□ 문제점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제 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입국금지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⁶⁰ 참여연대 성명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2012.09.0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47627>>

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입국이 금지된 이들은 하나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확한 사유는 말해 줄 수 없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과거에 강정마을을 방문했거나,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외국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제주도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은 정부가 단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외국 활동가들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관련하여 입국 허·불허에 대한 기준과 판단절차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담당 심사관 등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입국을 불허 당한 외국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불허 외국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혹은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법령 자체가 모호하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비준한 바 있는 UN 인권옹호자 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결사하여,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쓸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단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활동가들의 입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UN 인권옹호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평화, 환경,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UN 인권옹호자 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결사하여,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쓸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권리를 가진다

- (a)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 (b) 비정부기구, 협회, 또는 단체의 결성, 가입 및 참여
- (c) 비정부 또는 정부 간 기구와의 의견 교환

제12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단체나 개인이 자행한 폭력 행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반대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국내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3.2 강제추방

법무부는 강정마을에 머물며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해왔던 프랑스인 벤자민 모네와 영국인 엔지 켈터를 각각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으로 사실상 강정마을에서 쫓아냈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 실태는 국제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례 1] 벤자민 모네 강제추방

□ 사건개요

프랑스 국적의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는 2011년부터 강정마을에 머물며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3월 12일 구럼비 밭과 당시, 포크레인에 올라 항의를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구럼비 바위에서 다른 활동가가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를 본 벤자민이 함께 뛰어들었으며 그들은 폭행을 피해 포크레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서귀포경찰서는 벤자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다. 그는 3월 14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고, 3월 15일 강제퇴거 결정이 있고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짐과 은행카드 등 기본적인 것들도 소지하지 못한 채 홍콩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그는 후에 프랑스에 돌아가 보낸 편지에서 “그들은 저를 강제로, 어떤 이해할 만한 공식문서 없이 추방했으며 한 통화의 전화통화도 허용하지 않았고 정직함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도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5년간 한국에 입국이 금지되었다.⁶¹ 벤자민은 2011년 11월 대림산업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아직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강제퇴거 결정에서 이런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대리인을 통해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사례 2] 노벨평화상 후보 엔지 젤터 출국명령

□ 사건개요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인 영국인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는 제주국제평화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제주를 찾아, 2월 24일부터 강정마을에 머무르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동참해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발로 배를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3월 12일 그녀는 불법 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철조망을 자르고 구럼비 안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되었다. 서귀포경찰서는 벤자민과 마찬가지로 엔지 젤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14일 그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엔지 젤터가 3월 21일까지 출국의사를 밝히자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 문제점

경찰은 벤자민 모네와 엔지 젤터의 여러 가지 혐의를 모아 가중처벌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을

6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내렸다. 벤자민 모네는 2월 27일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 파괴, 3월 12일 무단출입죄, 상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엔지 젤터는 3월 9일 무단출입죄, 3월 12일 집단흥기 손괴 및 무단출입죄가 적용됐다.⁶² 특히 엔지 젤터는 강정포구에서 동방파제를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철조망을 끊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엔지 젤터가 끊은 철조망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이미 서귀포시가 해군기지사업단에 철조망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으나 해군이 응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끊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구럼비를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단출입죄를 적용한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혐의를 이유로 이들을 강제 추방시킨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자격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활동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언급한 UN 인권옹호자 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국내외적으로 평화적 회합 및 집회를 할 수 있으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광객 역시 당연히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건설회사 직원들의 폭력을 무릅쓰고 구럼비를 찾고, 공사 차량의 이동을 온몸으로 막는 등의 행위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 행위다. 벤자민과 엔지의 강정마을에서의 활동은 UN 인권옹호자 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저항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다.

한국 정부의 외국 활동가들에 대한 무리한 입국금지와 강제추방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라는 국제 NGO는 2012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한국 심의에 제출한 참여연대와의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강제 추방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 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거부 및 추방조치 방지 등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⁶³

62 제주의 소리, “평화활동가 추방 국제 외교적 문제 될 것”, 2012.03.15. <<http://www.jeje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597>>

63 참여연대 성명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2012. 09.0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47627>>

14 건설회사와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과 채증

주민과 활동가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권력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용역업체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회사,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채증 등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일들은 근본적으로 해군과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연장선 상에서 빚어지는 사건들이다.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한 해군 측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원들의 폭력과 사람들과의 충돌을 모를 리가 없는바, 이를 오히려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해군, 경찰이 이를 방관하는 가운데, 주민과 활동가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해군과 맺은 고용 계약의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경비업체와 관련해 현행법은 허가 경비업체만이 방어적 경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업체가 어떤 고용형태를 통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폭력 상황에 대한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례 1] 건설회사 직원의 폭언과 위협

□ 사건개요

2012년 1월 2일 공사장 정문 앞에서 불법 공사에 항의하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건설회사 직원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다.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고 사람들

을 밀치고 조롱하는 한편, “전라도 망신시키지 마!” 등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너 이쪽으로 따라와” 등의 협박을 가하며 공포감을 조장했다. 분노한 사람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 연좌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중재하려는 노력 없이 이들에게 해산을 명령했다.⁶⁴

[사례 2] 건설회사 직원에 의한 감금

□ 사건개요

2012년 2월 13일 오후 4시경 약 20명 가량의 종교인들이 구름비 바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카약을 타고 들어갔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려는데 풍량이 너무 높아 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육상으로 나오려고 하자, 대림산업 직원들이 할망물 부근에서 이들을 가로막고 1시간 가량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스크림을 짜고 사람들을 막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 2명이 한 여성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도 발생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경찰도 출동해 있었는데 이러한 부당한 감금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구름비 바위에 들어갔던 이들은 무단출입죄로 모두 범칙금을 발부 받았다.⁶⁵

[사례 3] 건설회사 직원의 폭행과 폭언

□ 사건개요

2012년 3월 9일 오전 10시 20분 무렵,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구름비 발파를 막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건설회사 직원들은 이들에게 심각한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다. “왜 이곳에 들어왔느냐 XXX” 등의 욕설을 퍼부었으며, 문규현 신부는 직원들에게 얼굴과 다리 등을 가격당해 상처를 입었다. 남성 직원들이 여성 활동가들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도 발생했다. 또한 불법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여 신분이 명확한 천주교 신부 등 성직자들을 체포해 억류하고, 후에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다.

[사례 4] 일상적인 채증

□ 사건개요

건설회사, 용역업체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주민과 활동가들을 채증한다. 사복을 입은 경찰의 채증과 더불어 이들의 채증은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2012년 3월 구름비 발파 당시에는 건설회사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채증하는 것을 활동가들이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64 관련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Pl4mR0Fn0qs&feature=youtu.be>>

65 관련 영상 <<http://cafe.daum.net/peacekj/49kU/1373>>

[사례 5]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폭행과 폭언

□ 사건개요

2012년 4월 26일 강정마을 공사장 정문 앞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불법 공사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오전 11시쯤 천주교 미사가 시작됐고, 문 신부는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 흙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상황에도 공사가 계속 강행되자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고 있었다. 이에 활동가들은 추락사고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문 신부를 걱정해 경비업체와 협의를 했고,



침사지 근처에서 채증하고 있는 대림산업 직원

▲ 사진출처: 다음 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2012.1.29

협의를 따라 문 신부는 미사 중 차량을 진입시키지 않고 미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후 미사를 진행하는 도중 해군 측에서 “공사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다” 등의 방송을 크게 하여 다시 종교행사를 방해하자 문 신부는 이에 항의하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문 신부가 승강이 도중 한 직원의 다리를 밀치게 되었는데, 그러자 30대 가량의 직원이 “야 이 XXXX야” 등의 격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며 문 신부에게 달려들어 배치기를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제설함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옆에 있던 수녀와 활동가들에게도 “XX년, X 같은 년”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활동가도 멱살을 잡혀 옷이 찢어졌다.⁶⁶



용역업체 직원이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 사진출처: 강정마을회, 2012.4.26



공사장 정문 앞에서 있는 복면한 용역업체 직원들

▲ 사진출처: 헤드라인제주, 2012.4.27

66 관련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YDipv2LEA5I&feature=youtu.be>>

□ 문제점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직원들과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은 이처럼 수시로 일어난다. 이들은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폭행도 자행하고 있다. 복면을 쓰고 근무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주민과 활동가들은 상당한 심리적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 처벌 등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2011년 9월 경찰청은 <집단민원 현장의 용역폭력 원천 차단한다> 라는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며 용역폭력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동시에 경찰청은 용역폭력 등 집단민원현장에서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여 예방하거나 제지·제압하기로 하였다.

○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예고정보활동을 강화하여 경비·용역 업체가 배치될 때는 전담정보관을 지정, 현장임장하여 합법추진(불법행위에 대한 경고·합법적 수단·행위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 폭력행위에 대해 상황발생 예고시, 현장 대치시, 충돌 발생시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상응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상황발생 예고시에는 신속대응팀(정보·생안·수사·경비·교통)을 구성하여 각 기능별로 폭력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 현장대치시에는 신속대응팀 현장출동, 각 기능 상황전파, 경력 현장 출동 후 엄중 경고 및 채증을 하여 폭력행위를 억제하며

※ 상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침범시 제지·격리 조치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경직법상 수권규정을 마련을 검토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발생시에는 즉시 경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용역과 상대방을 불문하고 충돌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폭력행위 확산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역업체가 배치될 때 현장에서 불법행위 등을 예방해야 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애초부터 지키지 않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폭력에 대응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15 기타

강정에서 일어나는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인권침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례들을 이곳에서 다룬다.

15.1 공사 중 날아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2011년 9월 구림비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면서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염분을 머금은 비산먼지가 감귤 하우스 위를 덮어 햇빛을 막고, 감귤이나 수출품목인 백합 등에 쌓이면서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2011년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12년 7월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정마을 감귤재배 주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요구 조정신청에서 시공사가 농가별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6,075만 원까지 총 9,1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들은 공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었고,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높이 6m 가량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등을 제작하기 위해 공사차량이 현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과 바람을 타고 비산먼지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주민들의 증언

- "강정에서 한라봉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이후 붉은색 먼지가 하우스 위를 덮어버리면서 열매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하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었는데 열매가 모두 파지가 되면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

- "해군이 공사현장을 펜스로 막아 감춰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군의 주민피해 예방대책은 엉터리로 비산먼지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이후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밭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밭이 푹푹 빠질 정도의 먼지가 쌓이고 있다"

- "현재 해군이 파괴하고 있는 구럼비 바위의 경우 예전 염전을 했던 곳으로 바위 자체가 많은 염분을 머금고 있다"며 "그런데 일단 깨부시고 보자는 해군이 중장비를 4대나 동원해 구럼비바위를 파괴하면서 염분을 머금은 먼지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비산먼지로 인해 검은 반점이 생긴 감귤

▲ 사진출처: 헤드라인 제주, 2012.7.3

□ 문제점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농사의 형태가 365 일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사 시행 전에 면밀한 환경영향 평가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일시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15.2 삼성물산 앞 퍼포먼스에 2,400 만원 손해배상 청구

2012년 3월 29일 흰 방진복을 걸쳐 입은 사람들이 붉은 수성페인트를 들고 정문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려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곧바로 경비들이 막고, 저항하는 그 사이 붉은 페인트가 삼성물산 정문 바닥으로 뿌려지고, 이들은 삼성 본사 앞을 삼엄하게 지키던 경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왔다. 경호원들은 여성활동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몸을 끌어당겼다. 삼성물산 사옥 앞에서 노란 펼침막을 들고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워서 퍼포먼스를 마친 후 활동가 5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지구대 경찰차에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사건경과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변호사가 체포이유를 묻자 30분 후에는 집시법이라고 말하는 등 체포의 근거도 없었다.

이후 삼성물산은 이 수성페인트 퍼포먼스에 대해 약 2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피해 목록을 제출했는데, 수성페인트를 지우는 약품값, 경호원들의 옷값, 시계값이었다. 수성페인트라 쉽게 지워질 뿐 아니라 처음 페인트가 뿌려지고 옷에 묻게 된 것은 삼성물산 경호원들이 과잉반응하면서 옷에 묻게 된 것이다.

삼성물산 경호원이 다가 오기 전에는 페인트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경호원 옷에도 묻지 않았다.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활동가들
▲사진출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2.3.29



남자 경호원이 여러 명 붙여 퍼포먼스를 하는 활동가들을 끌어 당기는 모습
▲사진출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2.3.29

□ 문제점

삼성물산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연행의 근거도 없이 연행하려 했다. 삼성물산의 경비들이 퍼포먼스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페인트가 땅에 떨어지고 옷에 묻은 것인데, 오히려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의 경비와 경찰은 삼성물산에 대한 비판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근거 없는 연행과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2012년 4월 6일 문정현 신부는 예수부활 주간을 맞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동쪽 해안에서부터 강정항 서방과제로 십자가 행진을 한 후 1시 18분 구름비 바위로 가려다가 강정항 서방과제 끝 지점의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에서 경찰의 제압으로 막혔다. 서방과제에서 해경 10여명과 다투다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긴급 출동한 119에 의해 26분만에 구조돼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문신부가 테트라포드 5m아래로 추락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4.6

□ 문제점

강정포구 서방과제 역시 공사장도 아니고 출입금지 구역도 아니다. 그럼에도 해경 30여명을 배치하고 출입을 법적 근거없이 통제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경찰이 시민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공사방해만을 막겠다고 해서 발생한 일이다. 그동안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방해를 사전예방 한다며 공사 예정지가 아닌 장소들까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출입을 봉쇄하며 일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왔기에 발생한 것이다.

15.4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2011년 6월 9일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네티즌들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해군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117건을 삭제하였다. 해군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제2호 나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목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참여마당
Free Board

자유게시판

☛ [원화면으로](#) > [원어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견학/면회신청
- 복지모담
- 입찰공고
- 제대군인지원중앙
- 행정서비스
- 정보공개제도
- E-campus
- 군사학술연구원모집

번호	제목	작성일자	날짜	조회수
공지	프레스시안 8,10일자 심층해부 : 제주 해군기지와 한국의 국역(...	관리자	2011-08-12	11
공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공지 안내합니다.	관리자	2010-05-07	142
공지	한역은 부대내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리자	2007-09-10	927
공지	중간! 해군 지원(장교, 부사관, 병/해경, 군무원)관련 줄임말.....	관리자	2007-07-16	1795
7847	해군익중요성!!	한성훈	2011-05-04	85
7846	해군23세대	가경순	2011-05-03	114
7845	삭제 조치합니다.	이주현	2011-05-01	84
7844	해군23세대 익산함	김남진	2011-05-30	164
7843	삭제 조치합니다.	오두현	2011-05-28	112
7842	삭제 조치합니다.	오두현	2011-05-28	81
7841	안보전시관명칭 결과나잇나요?	차광주	2011-05-25	94
7840	대형도해군기지가주소	김윤희	2011-05-25	63
7839	안보전시관명칭공모에관하여	김은규	2011-05-24	223
7838	3세대 사격장 관련	조주희	2011-05-24	124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 삭제된 모습

▲ 사진출처: 시사제주, 2011.9.6

□ 문제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가운데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를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자유가 있다. 해군은 게시글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접속 장소를 불문하고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영구히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해군의 게시글 삭제 과정에서 이의제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삭제사실을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 조는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 중 언론의 자유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언론이나 출판 등에 의하여 외부로 표현하고 전달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해군이 보다 덜 침해적인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해군기지건설 비판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에서는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15.5 펜스 찢어져 민간인 부상

□ 사건개요

2012년 4월 3일 낮 12시경 초속 30m/s 강풍으로 해군기지 사업단 펜스가 찢어져 활동가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119는 활동가를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겼고, 왼쪽 쇄골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찢어진 펜스가 얼굴로 향했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찢어진 펜스

▲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2012.4.3

□ 문제점

해군기지 사업단 펜스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군에게 있으며, 4월 3일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구림비 해안 전역을 둘러싸고 펜스를 쳐놓고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군에게 있다. 강정마을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태풍피해도 매년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된 시설물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이기도 하기에,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이 같은 일상적인 사고 위험은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V 결론

결론

1 조사 결과

조사단이 조사한 바로는 강정에서 지난 10 개월간 있었던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육지경찰이 들어오고 나서 인권침해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해군이 아직 군사기지가 아님에도 해군을 공사장의 경비용역 일을 맡기면서 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표명이나 행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다.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국회, 제주도의회에서도 설계상의 오류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의사표현까지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해군과 경찰에 의한 일상적 감시, 성추행을 포함한 폭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군사기지 정문에서 있는 종교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광범위한 연행과 자의적 구금이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 3자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건설회사의 용역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 인이 한국정부에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특별보고관 3 인은 한국정부가 100 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자 21 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강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폭력으로 서귀포신문이 2009 년 9 월 2 일에 10 일간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주민의 75.5%가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전체 주민의 43.9%로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보다 5.4 배가 높다. 더 이상 강정에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 폭력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주민 87 명만의 찬성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여 강정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비민주성, 설계상 15 만 톤 크루즈도 들어올 수 없어 민군복합관광미항은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이를 무시한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문화재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및 제주도의회에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칠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권고사항

1.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강정에서 일상적으로 경찰과 마주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채증을 당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감을 주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직접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 심리적 외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0 년 86 명, 2011 년 161 명, 2012 년 6 월까지 265 명. 연행자 수가 점점 늘어 나고, 2012 년에는 구속자 수도 늘고 있는 것은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해군의 민간인 폭행은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태도이기에, 해군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군과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불처벌에 대한 경계이다. 불처벌 배제의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48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다.

2.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때,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책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기지 건설과정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과연 무엇을 위한 ‘국가 안보’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4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제출된 불처벌 보고서에서도 불처벌은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육지경찰병력은 강정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와 연행자 및 구속자 현황을 보면, 2011년 육지에서 경찰이 파견된 이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에 마치 계엄상황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강정마을에 동원된 육지경찰병력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4. 경찰은 광범위한 업무방해 적용과 자의적 구금 등 위법한 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강정마을에서는 건설사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이전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이러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강정마을에서 마치 형벌처럼 남용되며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주거지가 분명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조사가 끝났는데도 48시간을 채우고 유치장에서 석방하는 등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벌금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여야 한다.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포와 기소, 벌금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막기 위한 시공사 측의 업무방해 적용은 주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에 앞서지 못한다. 경찰과 검찰은 위법한 체포로 발생한 벌금 및 기소를 중지하고, 재판부는 사법처리 대상자들인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범칙금 부과행위 남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이 제 3 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하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시공사 직원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옆에 출동해있는데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조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더욱 잦아질 것이기에 문제다. 또한, 형평성 없는 법 집행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법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당했다는 소외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법무부는 국제 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

단지 과거에 강정마을을 방문했거나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혹은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강정마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외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한 행위는 UN 인권옹호자 선언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강정마을에서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강정마을에서는 집회·시위와 모든 표현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경찰과 해군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9.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민주적인 모습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또한 경찰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과 활동가들은 폭력, 구속과 벌금, 손해배상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과 활동가들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10.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강정 주민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에 대한 성찰로 만들어졌고, 1984년 유엔 총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천명한 바 있다.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더욱이 해군기지 사업은 시작부터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절대보전지역 해제 날치기 통과 등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수 차례 위반하는 등 여러 모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별첨

[별첨 1]

강정마을 인권침해 일지 (2011년 9월~2012년 6월)

2011년 8월 상황 요약

8월 초 여야는 야5당의 진상조사 활동기간 동안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 강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으나 14일 서울·경기지역 5개 중대 500~600여명과 함께 대형 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 제주에 배치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이는 17일 이후 결정될 정부와 해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사방해금지 가치분을 신청하면서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반대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주민과 고령자, 심지어 병원에 있는 주민까지 포함하는 등 마구잡이로 이뤄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8월 24일 갑자기 2개월 동안 사실상 멈춰 섰던 크레인과 포클레인이 요란한 기계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태운 버스가 강정마을에 나타났다. 이 일정은 사전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공사 재개로 판단하고 몸으로 막아섰고 5명이 연행되면서 7시간 30분 동안 대치국면이 이어졌다. 경찰이 24일 자정 이내에 연행자를 석방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면서 대치국면은 해소되었지만 약속과 달리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강동균 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귀포서가 대치 상황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연행자 모두를 이날 안에 석방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서귀포경찰서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8월 26일에는 대검찰청이 경찰과 국정원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자 현장체포 △경찰을 폭행하거나 호송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과격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 전원 색출 등 원칙을 밝히고 경비, 진압 전문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팀)를 제주로 파견했다. 또한 이날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일본 AWC 소속 평화활동가 14명 중 2명을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서귀포시 강정에서 열린 '제국주의 및 군사기지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일 공동국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경찰력 배치를 늘려가며 공권력의 압박과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29일에는 경찰서 앞과 강정마을 일대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9월 15일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 통고서'

를 발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31 일에는 9 월 3 일 예정된 평화대 행진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핑계로 서울기동대 소속 4 개 부대와 여경 2 개 중대 등 450 명 과 물대포와 각종 진압장비를 제주에 배치했다. 이로써 경찰은 강정마을에 1000 여명의 경 찰병력을 배치하고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행진할 경우 불법시위로 보고 강제해산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31 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부지 4 곳과 화순항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금지 가치분 결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고시문은 주민과 평화활동가 37 명과 생명평화 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 등 5 개 단체 회 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국토해양부 장관은 외부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을 무 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막았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2011 년 9 월~12 월

해군기지 관련 주요 흐름	날짜	인권침해
	9 월 1 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종일 사 무처장,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아현 정책국장과 김모씨 체포. 김 국장은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
강호준 제주 서귀포경찰서장은 평 화문화제는 보장하지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출입통제 할 수도 있 다고 밝힘.	9 월 2 일	경찰병력 1,000 여명을 동원, 구름 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 단하고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 의 펜스 설치. 35 명 연행
경찰청 육지경찰 4 번째 파견(광주 경찰청 기동대 소속 3 개 중대 230 명). 강정마을에 1300 여명의 경찰 병력 상주.	9 월 3 일	제 3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 민행동(1 차 평화비행기) 개최. '야 5 당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정마 을 주민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던 목 포 활동가 1 명 연행
	9 월 4 일	고유기, 홍기룡(범대위 공동집행위 원장)과 김종일(평통사 사무처장), 주민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p>문화재청,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나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한다고 발표.</p>	<p>9 월 5 일</p>	
<p>국회 예결특위 내 제주해군기지사 업 조사소위 현지조사 시작. 김황식 총리,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발언. 구럼비 해안에 굴삭기 투입해 너럭바위를 깨며 진입도로 평탄화작업 진행.</p>	<p>9 월 6 일</p>	<p>해군기지 소위 위원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이 모 방송사 취재기자를 밀치는 등 취재방해.</p>
<p>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 체결 시 이중협약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한 것이 밝혀짐.</p>	<p>9 월 8 일</p>	
<p>제주 MBC 여론조사, ‘국책사업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2.2%,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33.3%. 해군제주방어사령관은 강정마을회와 제주 야5 당에 ‘계고서’를 보내, 오는 16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이전 또는 철거, 제거할 것을 통보.</p>	<p>9 월 9 일</p>	
<p>민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찬 참모총장과 이은국 사업단장 고발.</p>	<p>9 월 14 일</p>	

<p>야당 국회의원 96 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과 법률 준수 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p>	<p>9 월 15 일</p>	
<p>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이은국 단장,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행정대집행 통고 예정.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야5 당 앞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중덕해안’ 공유수면)’ 무허가 시설물 및 공작물 원상회복, 21 일까지 자진철거 요구.</p>	<p>9 월 16 일</p>	
<p>해군, 23 일까지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천막과 망루, 콘테이너 자진철거 2 차 계고. 포크레인 동원해 구럼비 해안에서 평탄화 작업 시작.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현장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지적.</p>	<p>9 월 20 일</p>	
	<p>9 월 21 일</p>	<p>경찰은 공사장 정문 주변을 원천봉쇄하며 기자회견을 막음. 정문에서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요구.</p>
<p>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청장,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사과 요구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발언. 해군, 22 일부터 제주방어사령부 소속 91 대대 해병대 병력 10 여명을 해군기지 경계근무 요원으로 파견받아 근무.</p>	<p>9 월 22 일</p>	<p>생명평화문화제가 끝난 직후 주민들이 이동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병력과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A 씨가 경찰방패에 내려찍혀 찰과상. 구럼비바위를 깨는 굴삭기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평화의 절을 올린 평화활동가 3 명 해군에 의해 제지당하고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남.</p>

해군제주방어사령부는 정진립 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야5 당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	9월 27일	
경찰청,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 등 T/F 팀 5명 파견.	9월 28일	
경찰청, 서울청 직원 기동대 4개 중대, 경기청 여경 2개 제대, 광주청 직원 기동대 3개 중대 파견.	9월 30일	경찰,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문정현 신부 등 성직자 3명을 연행.
	10월 1일	제4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2차 평화비행기) 개최.
	10월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던 대학생들에게 SSU 대원 폭행, 대학생 11명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 여대생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 대학생들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던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4명도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제주도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과보고서 채택.	10월 4일	해군기지 펜스 넘어간 성직자와 기자 등 10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연행과정에서 해군이 사진촬영 중용,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행동함.
제주 언론노조, 기자 석방과 취재활동 보장을 요구, 사법처리방침에 대해 비판.	10월 5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케이스 제작장을 만들기 위한 구립비 바위에서 시험발파를 실시.	10월 6일	구립비 바위 시험발파에 항의하던 문규현, 이영찬 신부가 경찰에 연행. 해상시위 벌이던 제주여성농민회 한경례 회장 등 8명 해군에 의해 연행.

<p>우근민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6 일에 이어 2 번째 취소. 제주환경연합, 해군이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행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지적.</p>	<p>10 월 7 일</p>	
	<p>10 월 9 일</p>	<p>법원, 6 일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의 구속영장 기각.</p>
<p>강정주민 도지사면담에서 '공유수 면매립 허가 취소' 요구.</p>	<p>10 월 11 일</p>	<p>구립비 바워서 기도위해 해군기지 사업부지 진입한 송강호 박사 경범죄처벌법 위반(무단출입)혐의 연행.</p>
<p>제주도, 해군기지 공사장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진상조사 착수.</p>	<p>10 월 12 일</p>	<p>레미콘 차량 출입저지위해 연좌중인 성직자들 경찰이 끌어냄. 이에 항의한 여성 평화활동가를 6 시간 후 자택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p>
<p>해군기지 시공업체, 서귀포경찰서에 구립비 바위 폭파를 위한 발파허가 요청, 경찰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p>	<p>10 월 17 일</p>	
<p>강정마을회,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내 구립비 발파 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대립건설과 삼성물산은 서귀포경찰서에 구립비 바위 발파허가 재요청.</p>	<p>10 월 18 일</p>	
<p>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강정주민 항의이후 퇴장.</p>	<p>10 월 28 일</p>	

	10 월 29 일	제 5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 민행동 개최. 경찰, 집회 준비물을 신고된 것이 아 니라며 강제로 빼앗아감.
	11 월 4 일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에 들어간 국 제평화 활동가 매튜 호이(Matthew Hoey)씨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
국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 원회’가 전반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가 민항 보다는 군항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내용의 제 1 차 활동결과보 고서 채택.	11 월 7 일	‘2011 노동해방선봉대’ 소속 노동자 4 명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진입했 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무단출입) 혐 의로 경찰에 연행,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미디어충청 정 00 기자가 1 시간 20 분 동안 해군에 억류, 해군 SSU 특수부대원들이 촬영한 사진의 삭제 요구, 전화 통화를 막고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함.
	11 월 8 일	신라호텔(국제군축비확산회의) 앞 에 서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해 1 인시위를 하던 활동가 3 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 취재기자에게 폭언한 해군 특수부대 원에게 항의하던 박 00 씨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행.
미디어충청 정 00 기자는 9 일 해군 이 폭언과 성희롱, 욕설에 대해 국 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접수, 국가인권위 조사에 착수.	11 월 9 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에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망루를 시공업 체 직원들을 동원, 전격 철거.
제주도는 총리실과 국방부에 크루즈 선박 입출항 여부를 검증할 검증위 원회를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요청.	11 월 10 일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지 공사와 관련해 '구립 비 바위 발파 중지' 요청 공문 제출.	11 월 14 일	

<p>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구립비 바위 발파에 앞서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제주도에 '지하수맥 정밀조사' 요청.</p>	<p>11 월 15 일</p>	
<p>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민군복합 항이 아닌 해군기지로만 건설될 경우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가 높은 것으로, 우근민 도지사의 '해군기지 해결노력'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옴.</p>	<p>11 월 23 일</p>	<p>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에 대해 벌금 1000 만 원,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과 평화운동가 송강호씨에겐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각각 선고.</p>
<p>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립비 해안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해 해군에 매립면허 부관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발송.</p>	<p>11 월 25 일</p>	
<p>신임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p>	<p>11 월 28 일</p>	
<p>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A 업체가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서를 경찰서에 접수.</p>	<p>12 월 1 일</p>	
<p>제주경찰청, '제 6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행동'에 경기청 기동대 4 개 중대 지원 등 총 11 개 중대 여경 1 개 제대 등 1000 여명 현장배치 계획.</p>	<p>12 월 2 일</p>	
<p>국제엠네스티,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조사관 강정마을에 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p>	<p>12 월 3 일</p>	<p>제 6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개최. 프랑스 평화운동가 벤자민 모네, 대림산업의 펜스 확장으로 벌어진 충돌(11.9)과 관련 상해죄로 경찰출석 명령 받음.</p>

	12 월 4 일	제주지방법원,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윤모 씨에게 무죄 선고,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해 벌금 200 만원을 선고.
강정마을회, 서귀포경찰서에 구립비바위 발파허가 신청서 반려 요청.	12 월 6 일	
서귀포경찰서, 대림산업 하청업체 의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	12 월 7 일	
김학철 서귀포경찰서장 취임식에서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한 경찰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	12 월 22 일	
	12 월 23 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입구에서 차량 시위를 한 김모씨(45)를 현행범으로 체포, 차량압수.
	12 월 26 일	공사장 입구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평화활동가 27명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
강정주민들,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신청 제기.	12 월 27 일	연행자 중 김모씨와 김종일씨(평통 사사무처장) 영장청구.
	12 월 28 일	김종일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1327 억원 중 1278 억원을 삭감키로 여·야 합의.	12 월 30 일	

2012 년 1 월~6 월

해군기지 관련 주요 흐름	날짜	인권침해 관련
	1월 2일	미사 중 차량진입으로 미사 방해, 이에 항의하자 용역들이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가함, 용역의 횡포에 항의로 공사장 앞에 연좌하자 금지통보된 장소에서의 불법집회를 이유로 해산명령.
	1월 10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공차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묵주기도를 드리던 천주교 수녀와 신부 등 21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
강정주민들, 우근민 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560명의 청구서를 전달.	1월 17일	강정마을 주민을 경찰에게 항의 중에 코를 잡았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1월 26일	바지선 크레인이 바다 속 테트라포트(삼발이)를 끌어올리는 해상공사를 저지한 활동가 5명 연행, 여성 활동가들을 남성 해경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을 잡아끌며 연행.
강정마을회, 해군이 침사지 조성을 위한 바지선 동원, 강정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트라포트 이설작업과 관련 제주도에 해군과의 사업 관련 협의 또는 승인과정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	1월 27일	강정포구에서 해경들은 해군기지 사업 중지를 호소하는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카누를 뒤집어서 활동가들을 바다에 빠뜨림.
	1월 28일	건설업체 직원이 침사지 공사현장에서 활동가들을 체중.

<p>강창일, 김우남, 김재운 제주지역 3 명의 국회의원이 해군의 강정항 시설 계획 변경공사 추진을 ‘불법’ 으로 규정하고 공사 중단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p>	<p>1월 30일</p>	<p>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미사를 집전하고, 평화기원 153 배를 올리면서 공사차량을 저지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3명 연행.</p>
<p>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가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수녀 강제연행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의 해명 요구.</p>	<p>1월 31일</p>	
	<p>2월 2일</p>	<p>영화평론가 양윤모 재구속 수감.</p>
	<p>2월 3일</p>	<p>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한 영화감독 및 성직자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p>
	<p>2월 8일</p>	<p>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압수수색.</p>
	<p>2월 9일</p>	<p>경찰, 해군기지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올리며 진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활동가 2명 연행. 강정앞바다 '뗏부리 해안'에서 공사를 저지하던 활동가 3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p>
<p>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운 의원은 서귀포경찰서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종교인 등을 연행에 대한 성명발표, 공권력 남용 중단과 종교인과 평화활동가들 즉각 석방 촉구.</p>	<p>2월 12일</p>	
	<p>2월 13일</p>	<p>공사장 정문에서 공사차량을 막자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사람들을 길가 양쪽으로 고착,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신부님을 1분간 폭행.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 기도회를 한 뒤 나오던 종교인 등 20여명이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2시간 남짓 억류됨.</p>

<p>해군기지 설계 오류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을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부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취소하라는 강정마을회의 요구를 제주도가 거부.</p>	<p>2월 15일</p>	
	<p>2월 16일</p>	<p>경찰, 구럼비 진입 활동가 6인 과태료 징수.</p>
<p>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 발표, “설계풍속/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항로 법선(法線)/ 선박시물레이션 4가지 항목에 문제점” 인정, 그러나 최종 결론은 '선박시물레이션 건의'에 그침.</p>	<p>2월 17일</p>	
	<p>2월 18일</p>	<p>제 7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개최.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 미신고 현수막 3 개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주민과 활동가 14명 연행.</p>
<p>EBS <지식채널 e> ‘구럼비’ 편, 교육방송 심의위원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방송불가 판정. 제주지역 4.11 총선 야권 예비후보 10명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p>	<p>2월 20일</p>	
<p>김황식 국무총리, 페이스북에 “지금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메모 게재.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총리실, 검증보고서 결론조작 압력행사” 의혹 폭로.</p>	<p>2월 21일</p>	<p>평화를 기원하는 기도 중 비를 피하기 위해 비닐로 바위사이를 덮었는데 경찰은 성직자 등 4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p>

<p>이명박 대통령, 취임 4 주년 특별기자회견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발표.</p> <p>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소집.</p>	<p>2월 22일</p>	
<p>국무총리, 제주도지사 면담.</p> <p>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총리실에 통보.</p>	<p>2월 23일</p>	
<p>해군, 구럼비 바위 해안 철조망 설치.</p> <p>우근민 제주지사, 기자회견에서 “(민군 복합항은) 당사자 해결의 원칙, 외부에서 온 분들 활동자제”하라고 발언.</p> <p>서귀포 경찰서장 2개월 만에 교체(경질)</p>	<p>2월 24일</p>	<p>제주지법, 문정현 신부 등 4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머지 8명에게 과태료 선고.</p>
	<p>2월 26일</p>	<p>경찰, 구럼비 해안을 찾은 제주국제 평화대회 해외활동가 등 16명과 항의자 5명 불법연행, 이 중에는 고등학생까지 포함.</p>
<p>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는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과 천주교 사제, 수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p>	<p>2월 27일</p>	<p>강정 구럼비 해안에 가려던 마을주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4명, 평화활동가 1명 등 총 5명이 경찰에 연행, 이를 제지하던 마을 주민 2명 부상당함.</p>
<p>해군출신 새누리당 김종식 예비후보,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촉구.</p> <p>민주통합당,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문.</p> <p>민주당 김재윤 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3가지 해법 공개 제안.</p>	<p>2월 28일</p>	

<p>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공사강행 발표,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 경고, 지역발전계획 10년동안 총 1조 771억원 중 국비 지원은 5787억원만.</p> <p>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청년회·노인회·부녀회·민속보존회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제주해군기지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p>	<p>2월 29일</p>	
<p>시공사 삼성물산, 대형 바지선으로 강정 앞바다 준설.</p>	<p>3월 1일</p>	
<p>시공사 대림산업, 서귀포경찰서장에게 구럼비 발파 신청서 접수.</p>	<p>3월 2일</p>	
<p>우근민 지사, 오충진 도의회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재운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기자회견, “민군복합항의 공정한 검증과 이를 위한 즉각적인 공사 일시보류” 요청.</p> <p>각계 인사 26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비상시국회의 제안.</p>	<p>3월 5일</p>	
<p>국방부, 우근민 지사 공사보류 요청 거부, 구럼비 폭파 도상훈련에 돌입.</p> <p>서귀포 경찰서장, 구럼비 발파 허가. 평통사, '명예훼손 혐의' 국정원장 고소. 양윤모 옥중 단식 29일째.</p>	<p>3월 6일</p>	<p>성직자와 평화활동가 10여명, 서귀포시 안덕면의 J 화약 공장의 진입로를 막고 구럼비 폭파 철회를 요구, 경찰은 활동가 4명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 검거.</p>

<p>구럼비 발파 시작, 강정 앞바다에 첫 번째 케이슨 투하.</p> <p>비상시국회의, 공권력을 앞세워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럼비 발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p>	<p>3월 7일</p>	<p>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하던 평화활동가 2명이 탄 카약을 해경 보트 수척이 해상에서 포위, 고의적인 충돌로 전복.</p> <p>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 등에서 화약이동을 막던 사람들 중 19명 업무방해,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연행, 차량 7대 압수.</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창국, 하경철, 최병모, 김필성 변호사, 강정마을 주민을 대리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p>	<p>3월 9일</p>	<p>구럼비 발파 저지를 위해 펜스를 뚫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간 성직자와 활동가 29명을 7시간 동안 억류 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를 남성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자 다수 발생.</p>
<p>인권단체연석회의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3일간의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p>	<p>3월 10일</p>	<p>제8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개최.</p>
	<p>3월 11일</p>	<p>제주지방법원, 3월 9일 연행된 김정옥 신부, 이정훈 목사에게 구속영장 발부.</p>
	<p>3월 12일</p>	<p>한겨레신문 박00 사진기자는 구럼비에 들어간 활동가와 성직자 50여명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는데 기자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연행.</p> <p>경찰,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엔지젤터와 프랑스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를 재물손괴 혐의와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p>
	<p>3월 14일</p>	<p>3월 12일 연행된 엔지젤터와 벤자민 모네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추방결정.</p>

	3월 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던 엔지 젤터를 출국을 약속받고 석방, 벤자민 모네는 14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후 홍콩으로 강제추방.
	3월 17일	제9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개최. 육지에서는 경찰이 강정포구 동방파제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고, 바다에서는 해경이 카약과 수영을 막음.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뗏부리 인근 침사지 제방이 강풍과 파도에 의해 무너져 내리면서 흙탕물이 바다로 쏟아져 오염.	3월 18일	
해군기지사업단, 제주도지사의 공사보류 요구와 재검증 요구에도 오후 6시 5분부터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 노출암 바위를 직접 파괴하는 발파작업을 하루동안 총 11차례 기습적으로 강행.	3월 19일	평화활동가들, 화약고 앞을 인간띠로 막아서자 경찰은 망치와 가위로 1시간여 만에 무리하게 PVC 파이프를 해체하고 활동가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 발생, 기자와 변호사의 접근 제한.
	3월 20일	양윤모 씨 수감과 옥중단식 42일 만에 보석 석방. 평화활동가와 성직자 36명 구럼비 바위로 진입,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구럼비 발파 중단 촉구 항의시위를 진행.
해군참모총장 방문과 함께 구럼비 바위 발파 작업 전격 재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4차례 폭파, 삼성물산은 이날 화약 1.5톤 사용(해군기지 공사 시작 후 하루에 사용된 폭약으로 최대 규모). 강정마을 뗏부리 인근 해군기지 사업장 1공구 침사지 바로 밑 해안 흙탕물로 오염. 엔지 젤터, '구럼비 발파 강행과 인권탄압 규탄' 내외신 기자회견.	3월 21일	구럼비 노출암 발파에 항의하던 평화활동가 등 4명 연행. 강정포구 입구 커브길에서 활동가 1명이 지나던 경찰버스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버스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했으나 경찰 측은 사고처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과를 거부.

<p>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참모장 홍모 대령을 보직 해임.</p> <p>국토해양부, 삼성물산 소유 플로팅독(SFD 20000 호)이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항해하여 선박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힘.</p>	<p>3월 22일</p>	
<p>강정마을 주민 4명, 제주지방법원에 삼성물산의 플로팅독(SFD 20000 호)의 '운항금지 가치분'을 신청.</p> <p>강풍과 2-3m의 파도로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설치된 침사지가 붕괴, 오탁방지막 훼손. 서귀포 해양경찰서, 해군의 요청으로 강정 앞바다를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금지기간 2012.4.13~2015.12.31)</p>	<p>3월 23일</p>	<p>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인근에 기도실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던 송강호 박사 등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p>
<p>케이슨 제작장 설치와 삼성물산 1공구 방파제 건설을 위한 적출장 조성 등을 위해 기상 악화로 이틀간 중단됐던 구럼비 해안 발파를 재개.</p>	<p>3월 24일</p>	
<p>강정포구 동방파제 인근에 조성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침사지에서 흙탕물이 바다로 유출되기 시작, 오탁방지막이 파도에 훼손된 상태에서 침사지 밑으로 흙탕물이 나오면서 바다를 오염.</p>	<p>3월 25일</p>	

<p>제주도, 공사가 허가 사항대로 이행 되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시행, 해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물레이션 검증기간 중 구럼비 발파공사와 해상공사 전면 중지를 공식 요청.</p> <p>해군과 시공사는 제주도의 방문에 앞서 오후 1시 46분부터 2시까지 1-2분 간격으로 1공구와 2공구에서 2차례와 7차례씩 할망물 인근 바위와 주변을 폭파.</p> <p>삼성물산은 불법 운항한 플로팅독(SF D 20000호)에 신고 온 8800톤급 케이슨을 해상에 임시 투하.</p>	<p>3월 26일</p>	<p>범대위 제주도청 앞 철야 농성 시작, 도청 앞 인도에 2인용 텐트를 설치하자 공무원과 경찰 수백 명이 투입돼 강제 철거,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여성 활동가 1명은 실신.</p>
<p>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서귀포경찰서 장에게 '화약류운반신고수리의 당연무효 및 운반저지행위에 대한 현행법체포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서 제출.</p>	<p>3월 27일</p>	
<p>해군과 대림산업은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 구럼비 바위에서 2시 43분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연속 발파, 이어 3시 30분까지 구럼비 바위 위쪽과 해상 등 2공구에서 16차례, 750kg의 화약을 사용하며 구럼비 바위를 폭파(첫 발파 이후 가장 많은 횟수의 발파).</p>	<p>3월 28일</p>	

<p>제주지역 3 명의 현역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운 의원) 해군의 구럼비 폭파에 대해 공사 중단 촉구.</p>	<p>3 월 29 일</p>	<p>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던 활동가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연행, 2 명의 부상자 발생.</p> <p>해군기지 시공사 삼성물산 본사(서울 서초구) 건물 앞에서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활동가 6 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연행, 삼성물산 경비원들은 퍼포먼스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폭력 행사.</p>
	<p>3 월 31 일</p>	<p>제 10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개최.</p> <p>강정포구로 거리행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를 포구에 배치, 서방파제 진입 막음.</p> <p>일본 활동가 야기류지 씨(일본 평화포럼), 강정 평화문화제 참석위해 제주 도착했으나 입국거부, 제주출입국 관리소에 억류되어 5 시간 이상 조사 받은 후 강제송환.</p>
	<p>4 월 1 일</p>	<p>민주노총 총연맹, 강정마을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공공기관 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한미 FTA 폐기! 제주 4.3 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구럼비로 행진하자 경찰은 최루액을 쏘고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한 송강호 박사 등 9 명 연행, 연행 과정에서 송강호 박사가 이가 부서지고 턱이 찢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함.</p> <p>코사마트 사거리에서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어 경찰버스 운행을 저지한 활동가 8 명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p>

<p>초속 30m/s 강풍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펜스가 찢어져 평화활동가 1명이 부상.</p>	<p>4월 3일</p>	<p>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 5명, 외곽 펜스를 뚫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에서 연좌시위 진행, 재물손괴와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 제주지방법원, 입원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송강호 박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p>
<p>국방부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청문회와 관련,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곧바로 법률 검토를 거쳐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재개할 명분이 없다며 야당과 제주도의 공사중단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 2공구에서 구럼비 발파 강행.</p>	<p>4월 4일</p>	<p>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평화활동가 1명 연행. 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손괴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선고, 구속된 지 26일 만에 석방.</p>
	<p>4월 5일</p>	<p>경찰, 조현오 청장의 제주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 공항리무진 버스가 강정마을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버스회사에 요청.(오후 2시~6시)</p>
	<p>4월 6일</p>	<p>문정현 신부, 강정포구 서방파제에서 기도 중 해경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7미터 테트라포트 아래로 추락, 허리 등에 심각한 부상. 학교폭력 간담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강정 주민들은 과잉대응과 경찰폭력에 대한 사과와 공청회를 열자며 면담 요구, 버스를 향해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던진 주민 연행.</p>

	4 월 9 일	현애자 전의원이 사업단 정문 맞은 편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에 해산명령을 함, 해산하는 사람들을 고착시키고 현애자 전의원을 체포.
	4 월 10 일	제주지방법원, 9 일 체포된 현애자 전의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 인용해석방.
	4 월 12 일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저지하던 주민과 활동가 8 명을 업무 방해 혐의와 집시법위반 혐의로 연행.
서귀포해양경찰서, 강정 앞바다 '수상레저금지구역' 공고 강행.	4 월 13 일	서귀포경찰서, 강정마을 체육공원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공사장 정문, 강정포구 등 6 곳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 전면 금지 통고(기간 : 4.15~5.12).
	4 월 14 일	제 11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개최. 해군기지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려던 평화활동가들 경찰과 충돌, 재물손괴와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12 명 연행.
	4 월 15 일	해군기지사업단 펜스를 향해 돌맹이를 던지는 등 항의를 하던 평화활동가 1 명 연행
	4 월 16 일	평화활동가들 PVC 파이프로 인간띠를 만들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 저지, 경찰 '에어톱'을 이용 PVC 파이프로 연결한 인간띠 해체하고 이영찬 신부 등 14 명 연행, 에어톱 사용에 항의하던 문규현 신부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실신.

	4 월 17 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공사장 정문에서 공사차량 이동을 저지하며 항의시위 진행, 경찰은 해당 장소에 대한 집회신고가 불허됐다고 김종일(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등 2 명을 연행하고 방송차량을 압수.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을 제출,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전달.	4 월 18 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계시민선언’ 기자회견,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전세계 800 여명의 지식인들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4 월 19 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고권일 위원장이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과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을 위반으로 고발.	4 월 24 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도회 진행 중 목사 1 인이 출입문 앞에 앉아 공사장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서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장서 연행.
강정마을회,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옥외집회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제기.	4 월 25 일	
국방부, 제주해군기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4 월 26 일	공사장 정문 앞 천주교 미사 중 공사차량이 진입하자 문정현 신부가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막아섬, 용역업체 직원들이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던 수녀에게 욕설 등 폭언.

<p>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제주해군 기지와 관련해 중단없이 추진돼야고 발언. 장하나 의원의 제주도청 방문 거부.</p> <p>정부가 만든 협약서가 이중임이 드러남. 민변 164 명 변호사,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길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p>	<p>5월 1일</p>	<p>김기용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조사하겠다고 밝힘.</p>
<p>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읍면동 대책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p>	<p>5월 3일</p>	<p>제주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 인권센터 조사 착수.</p>
<p>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전면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p>	<p>5월 4일</p>	
<p>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 확인됨(4월 25일 입법예고).</p>	<p>5월 6일</p>	
<p>삼성물산,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플로팅톡(floating dock)'을 운항했다가 해경으로부터 불구속 입건.</p> <p>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각계각층 인사 78인 호소문 발표.</p>	<p>5월 7일</p>	
<p>민변 '무역항 지정, 군사시설 개정안 등에 대한 법제처'에 의견서를 제출.</p> <p>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 '제주해군기지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p>	<p>5월 8일</p>	

	5 월 10 일	<p>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과 마을주민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고유기 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과 홍기룡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p> <p>제주지법 행정부는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 집회·시위 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p>
재판부, 집회시위 금지통고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5 월 11 일	<p>제주지방법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윤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을주민 김모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여농 사무총장 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 평화운동가 오모씨와 김모씨, 황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p> <p>재판부가 집회시위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p>
제주해군기지 방파제의 핵심 구조물인 케이슨 제작을 맡은 삼성물산 도급업체 A 건설 측 케이슨이 부실하게 제작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	5 월 12 일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에 제주도가 참석하지 않음.	5 월 16 일	
해양경찰청장, 해군기지 인근에 배치된 경비함정을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5 월 17 일	<p>제주도청이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의 도청 현관 앞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p>

	5월 18일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며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1000 배를 하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공무원들에게 끌려나옴, 4명 연행.
강정마을 불법공사 감시단, 강정해군기지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와 오락수 유입 등 불법 공사 문제제기.	5월 22일	
우근민 제주도지사, 현 상황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임태희 새누리당 경선 후보 간담회.	5월 23일	
이재오, 해군기지 재검토 반대. 해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관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설명회 개최하지 못함.	5월 29일	
	5월 3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마을주민 4명이 당시 고창후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마을주민 379명이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행사장 앞에서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기자회견 개최, 경찰은 진의경과 여경 100여명 현장에 배치.	6월 1일	
	6월 2일	제 12 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개최
우근민 도지사, 해군기지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해군이 15 만톤 크루즈 2 척의 자유로운 입·출항 검증에 제주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힘.	6월 4일	

2 만 7500 여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청원서가 제 19 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 1 호 청원으로 접수.	6 월 5 일	
	6 월 7 일	제주지방경찰청, 강정마을회에서 진행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6 월 13 일	제주지방법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신부에게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 년 선고, 이영찬 신부 구속영장 기각.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해군기지 오탁방지막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1 년 넘게 공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취소할 것을 촉구, 제주도 민원실에 불법 공사 증거사진과 영상, 공문서 접수.	6 월 14 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불법 공사에 항의하던 활동가 2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연행 과정에서 활동가 1 명은 다리 골절상을 입어 제주대 병원으로 이송.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 제주민군복합항 해군아파트(군관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6 월 15 일	제주지방법원,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 년 선고.
이중구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집회 시위와 관련해 경찰청의 기초대로 법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밝힘.	6 월 19 일	
	6 월 20 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해군기지 관련 마을 공식후원계좌와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2 차 출석 요구 거부. 제주지방경찰청, 평화활동가 2 명에 대한 개인 후원금 모금 계좌에 대해 내사
	6 월 24 일	밤 11 시 20 분경 해군기지 사업장에 몰래 들어갔던 활동가 박모씨 등 3 명을 야간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연행.

<p>오후 11시부터 강정 앞바다에서 바지선 2 대를 동원해 해저 준설공사를 강행.</p>	<p>6월 29일</p>	
	<p>6월 30일</p>	<p>준설공사 진행을 목격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50여명은 강정포구로 집결 해군 측의 공사 강행에 대해 항의, 2명 연행.</p>

[별첨 2]

경찰청에서 공개한 연행, 기소, 구속자 현황(장하나 의원실 정보공개청구)

1. 강정마을 지역에서 총 발부된 체포영장 통계

- 2010~2012 년 7 월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총 10 명

발부 일시	인원	체포영장 내용
'11. 07. 12	3명	·업무방해
'11. 08. 31	2명	·업무방해 ·체포자 호송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11. 09. 01	5명	·업무방해 ·체포자 호송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2. 총 발부된 구속영장 통계

- 2010~2012 년 7 월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 31 명 신청하여 17 명 발부, 14 명 기각

발부 일시	인원	구속영장 내용
'11. 04. 08	1명	·업무방해, 폭행
'11. 05. 21	1명	·업무방해
'11. 07. 17	2명	·업무방해
'11. 08. 26	3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1. 09. 04	4명	·공무집행방해
'12. 02. 02	1명	·업무방해
'12. 03. 11	2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2. 03. 31	1명	·공무집행방해
'12. 04. 03	1명	·업무방해
'12. 06. 15	1명	·업무방해

3. 체포 이후 기소된 총 기소자 수

연도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7월 현재
인원(기소의견)	32	144	196

- 정식, 약식 기소는 별도로 경찰에서 관리하지 않음
- 체포 이후 기소의견 송치 건수(372 명)

○ 2010 년도

일 시	체포인원	내용	의견송치
'10.01.18	52명	업무방해	.기소 12
'10.12.27	34명	업무방해	.기소 20

○ 2011 년도

일 시	체포인원	내용	의견송치
'11.04.06	2명	업무방해	.기소 2
'11.05.09	1명	업무방해	.기소 1
'11.05.19	9명	업무방해	.기소 9
'11.07.08	29명	업무방해	.기소 29
'11.07.15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08.09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08.24	5명	업무방해	.기소 5
'11.08.25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09.01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09.02	35명	업무방해	.기소 18
'11.09.03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 9. 30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 10. 2	15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5
'11.10.04	10명	경범죄, 집시법위반	.기소 10
'11.10.06	4명	경범죄	.기소 4
'11.10.09	1명	경범죄	.기소 1

'11.10.11	1명	경범죄	.기소 1
'11.10.12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1.10.22	3명	업무방해	.기소 3
'11.11.04	1명	폭력행위등	.기소 1
'11.11.08	4명	경범죄, 퇴거불응	.기소 4
'11.12.23	1명	업무방해	.기소 1
'11.12.26	27명	업무방해	.기소 27

○ 2012 년도

일 시	인 원	내용	의견송치
'12.01.10	29명	업무방해	.기소 1
'12.01.16	2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2
'12.01.17	1명	업무방해	.기소 1
'12.01.27	2명	업무방해	.기소 2
'12.01.30	3명	업무방해	.기소 3
'12.02.03	8명	업무방해	.기소 8
'12.02.05	10명	경범죄	.기소 10
'12.02.09	5명	업무방해	.기소 5
'12.02.18	14명	집시법	.기소 14
'12.02.21	4명	경범죄	.기소 4
'12.02.26	16명	경범죄	.기소 10
'12.02.27	5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5
'12.02.28	3명	경범죄	.기소 3
'12.03.06	4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4
'12.03.07	19명	일반교통방해	.기소 8
'12.03.08	2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2
'12.03.09	30명	경범죄, 공무집행방해	.기소 23

'12.03.10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3.12	16명	경범죄, 폭력행위등	.기소 9
'12.03.19	10명	업무방해	.기소 10
'12.03.21	4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기소 3
'12.03.23	2명	도로법위반, 업무방해	.기소 2
'12.03.29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4.01	9명	일반교통방해	.기소 9
'12.04.03	5명	업무방해	.기소 5
'12.04.06	2명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4.09	2명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기소 2
'12.04.12	8명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기소 8
'12.04.14	12명	재물손괴, 집시법위반	.기소 11
'12.04.15	1명	경범죄,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4.16	14명	업무방해	.기소 13
'12.04.17	3명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기소 1
'12.04.24	1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5.31	1명	공무집행방해	.기소 1
'12.06.04	1명	업무방해	.기소 1
'12.06.07	2명	업무방해	.기소 2
'12.06.08	8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기소 4
'12.06.14	2명	업무방해	.기소 2
'12.06.24	3명	업무방해	.기소 3

경찰청에 보내는 질의와 요구

수 신 김기용 경찰청장,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발 신 강정인권침해조사단
(담당 : 명숙 02-365- 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제 목 강정에서 일어나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질의와 요구
날 짜 2012. 9. 19. (총 2쪽)

1. 안녕하십니까.
2.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강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와 요구를 전달합니다.
3.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사항

- 1>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2> 강정마을에서 연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경찰이 본청의 지휘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공안사건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민들의 반대 의사 표현을 공안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 아닙니까?
- 3> 제주는 4·3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섬입니다. 따라서 육지경찰이 강정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제주도민을 적대시하는 행위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지경찰이 들어온 이후 경찰에 의한 폭력과 연행이 늘고 있습니다. 육지경찰병력 철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4> 강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경찰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요구사항

- 1>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 2> 경찰 폭력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육지경찰병력은 강정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 3> 경찰은 광범위한 업무방해 적용과 자의적 구금, 불법 사진채증 등 위법한 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 4>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 강정마을에서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 6>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